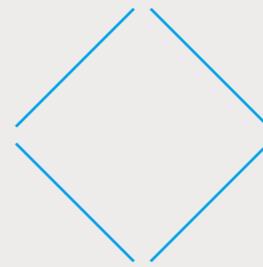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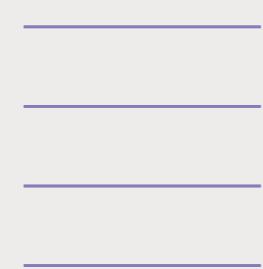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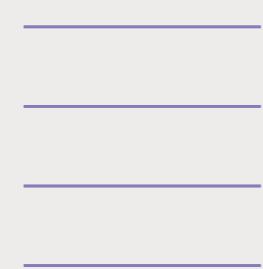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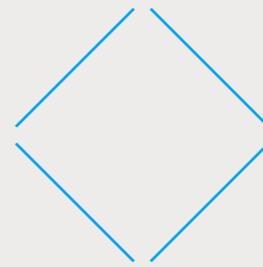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개정판

Public Design Administration Work Guide Revised Edition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개정판

Public Design Administration Work Guide Revised Edition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개정판

Public Design
Administration Work Guide
Revised Edition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개정판

Public Design
Administration Work Guide
Revised Edition

본 안내서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규정의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도 적용방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개정판

Contents

	I.	II.	III.	IV.	V.	VI	
개발 목적과 구성	공공디자인 행정	공공디자인 행정	공공디자인 행정	공공디자인 행정	공공디자인 행정	공공디자인 행정	부록
	이해하기	구축하기		실행하기	공유하기	활용하기	
1. 개발 목적 8 2. 구성 체계 9 3. 적용 기준 11	1. 공공디자인 개념과 대상 14 2. 공공디자인법 구조 16 3. 공공디자인 추진 주체 24 4. 공공디자인 관련 디자인 30 5. 공공디자인 동향 40	1. 조례 제·개정 48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55 3.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 69	1.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80 2.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89 3.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103	1. 공청회 개최 110 2. 추진협의체 운영 115	1. 공공디자인 전담기관 118 2. 우수 공공디자인 120 3.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130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4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9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2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144 5.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154 6.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156 7.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158 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_권장형 160 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_일반형 167 10.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현황 176	

■ 개발 목적과 ● 구성

- | | |
|----------|----|
| 1. 개발 목적 | 8 |
| 2. 구성 체계 | 9 |
| 3. 적용 기준 | 11 |

1. 개발 목적



1.1. 관련 규정 현행화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초 발간한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의 내용 중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라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가기관 등의 해석을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등 신규 업무를 반영함

1.2. 행정 효율성 향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한다)」 제정(2016. 2. 3.)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유도함
- 모든 디자인 행정가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업무 처리방법과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제공함

1.3. 관련 업무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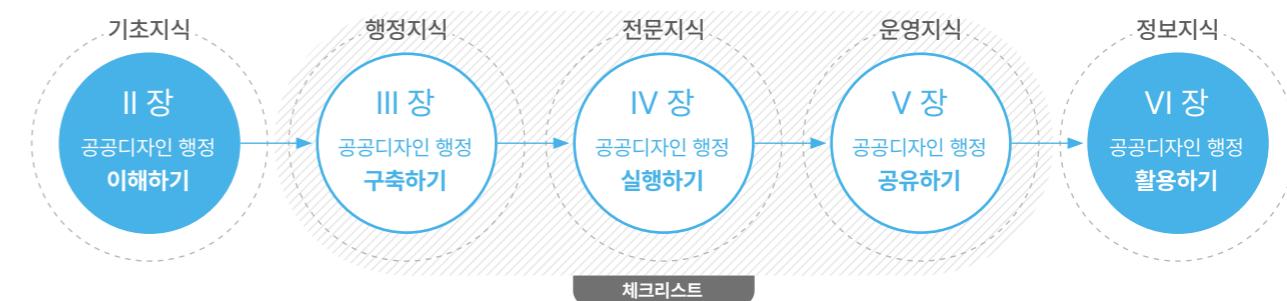
- 「공공디자인법」 및 하위 법규 등에 따라 공공디자인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가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공공디자인 행정 프로세스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공디자인 동향 변화에 따라 신규 업무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공유함

2. 구성 체계



2.1. 담당업무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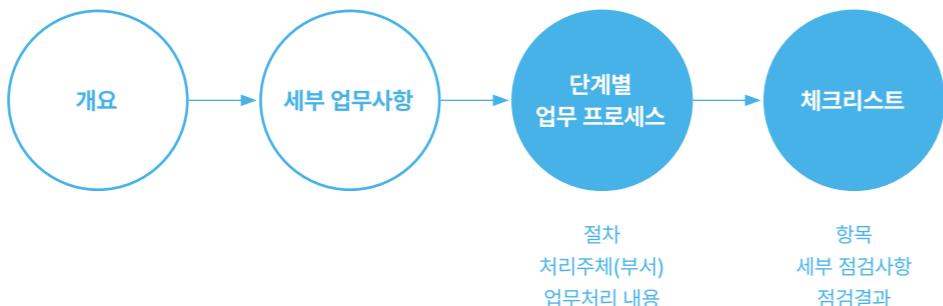
- 「공공디자인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담당자가 실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등을 단계별로 구분함
-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장을 구성함
 - 이해하기** 공공디자인 개념과 대상, 법체계, 추진 주체, 동향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초 지식
 - 구축하기** 조례 제정, 지역 공공디자인 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제도 등 기반구축에 필요한 행정지식
 - 실행하기** 기반구축 후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사업 등 공공디자인 구현에 필요한 전문지식
 - 공유하기** 시민과 함께하는 공청회, 추진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운영지식
 - 활용하기** 국가 단위의 사무를 이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지식
- 공공디자인 행정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축하기, 실행하기, 공유하기 등 3개 장은 개요 → 세부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체크리스트 순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구조화함
- 해당 업무의 처리절차를 구조화할 수 없는 경우 운영 사례를 제시하여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도함



[그림1] 행정업무 안내서의 구성

2.2. 업무 흐름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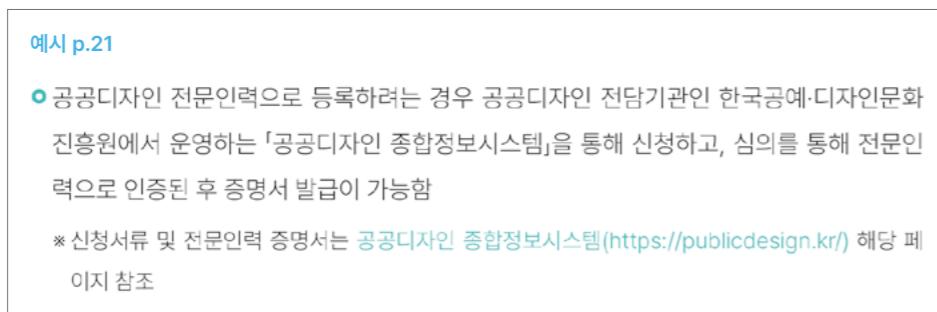
- 각 단계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의 절차와 처리 주체(부서), 업무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공함
- 최종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해당 업무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유도함



[그림2] 업무 체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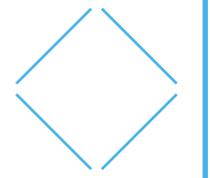
2.3. 관련 지침 등 자료 연계

- 본문에서 다른 공공디자인 관련 지침 및 자료를 부록으로 제공하고, 세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의 도메인을 표기함



[그림3] 관련 누리집 표기(예시)

3. 적용 기준



- 「공공디자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하위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을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의 작성 기준으로 설정함
- 해당 업무가 「공공디자인법」과 하위 행정규칙에 없는 경우 관련 중앙 부처의 행정규칙을 참고함
- 세부 업무사항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준을 우선 반영하되, 가급적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적용함



[그림4]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적용 기준

II. 공공디자인 행정 이해하기

1. 공공디자인 개념과 대상 14
2. 공공디자인법 구조 16
3. 공공디자인 추진 주체 24
4. 공공디자인 관련 디자인 30
5. 공공디자인 동향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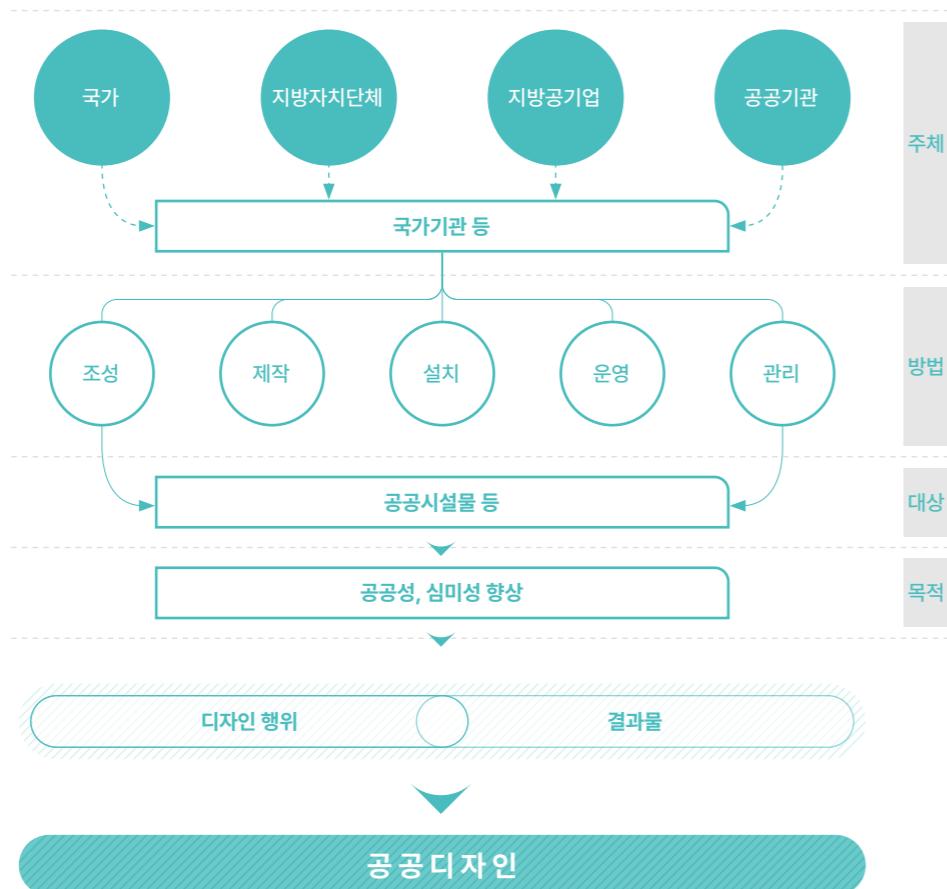
1. 공공디자인 개념과 대상



1.1. 용어의 법적 정의

1.1.1. 공공디자인

-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함(「공공디자인법」 제2조 제1호)



[그림 5] 공공디자인의 개념

1.1.2. 공공디자인 사업

-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함(「공공디자인법」 제2조 제2호)

1.1.3. 공공시설물 등

-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기타 시설물) 등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함(「공공디자인법」 제2조 제3호)

1.2. 공공디자인 대상

1.2.1. 법률적 대상

- 「공공디자인법」에 따른 협의적 개념에서 공공시설물과 공공용품, 공공시각이미지 등을 대상으로 함

1.2.2. 실효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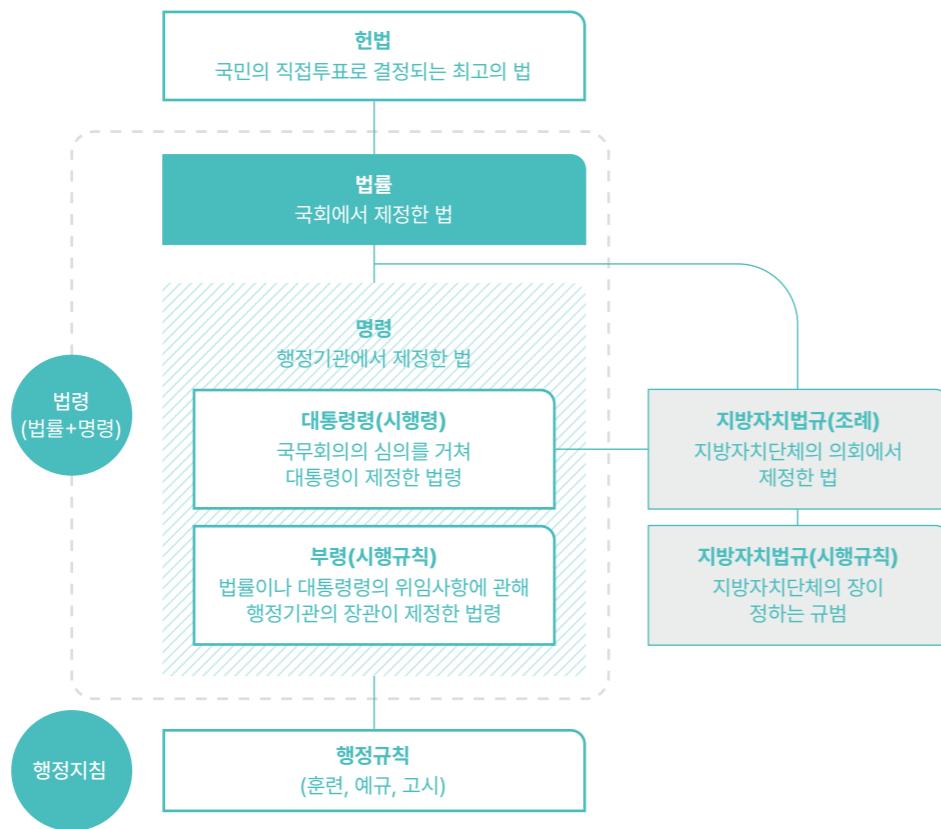
- 「공공디자인법」으로 정한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 대상을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함
-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공공디자인법」으로 정한 대상 이외에 공공공간을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하고,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공공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음
- 최근 「공공디자인법」으로 규정한 공공시설물 등의 해석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에 더해 공공시설물이 설치되는 공공공간까지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2. 공공디자인법 구조



2.1. 법 위계와 형식

- 공공디자인 행정은 근거법인 「공공디자인법」과 하위 법령, 행정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의 위계와 형식 등의 구조적 이해가 필요함
- 구조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기관에서 제정한 명령을 합하여 법령이라 하고, 명령에는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이 포함되며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의 수직적 위계를 둠
-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지침으로 통상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이 이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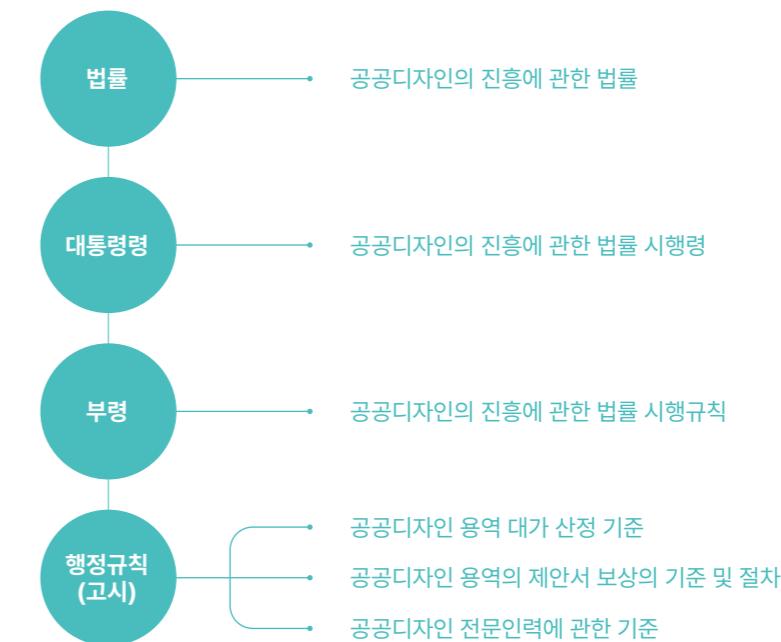
[그림 6] 법의 위계

TIP 용어의 정의

- **훈령**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 **고시** 법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적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 **공고**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 **지침**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규정

2.2. 공공디자인법의 위계

- 「공공디자인법」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되었으며, 일반적인 법 위계와 마찬가지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수직적 구조를 가짐
- 법령 하위의 행정지침으로 2018년 1월 18일 제정된 3건의 고시(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가 있음



[그림 7] 공공디자인법의 위계

2.3. 공공디자인법령의 주요 내용

2.3.1. 공공디자인법

- 제1장(제1조~제4조)에서 용어의 뜻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 제2장(제5조~제6조)에서 국가계획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광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제3장(제7조~제9조)에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고, 지역은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제4장(제10조~제17조)에서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과 용역 참여, 제안서 보상, 공청회, 추진협의체, 전문가 참여,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의 배치에 관해 규정함
- 제5장(제18조~제21조)에서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기관의 육성,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에 관해 규정함

2.3.2.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 「공공디자인법」에서 위임한 실태조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용역 참여 기준, 추진협의체 구성, 전문가의 자격기준,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3.3. 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

- 「공공디자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회사의 기준 및 신고, 전담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4. 공공디자인법 하위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

2.4.1.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공공디자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거나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전문인력을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 적용함
-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를 합산하여 산출도록 규정함

[표 1]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구분	적용 산식
직접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 (투입 인원수 × 투입 개월 수) × 등급별 월 인건비 기준단가 * 단, 등급별 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 1.8 ~ 2.2배 적용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 경비로 여비,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3D 그래픽비, 영상·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위탁비·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 실제 경비
제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인건비, 직접경비를 제외한 간접 경비로 임원·사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 직접인건비 × 110 ~ 120%
창작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 사용료, 특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체재산권 사용료 등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4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0%)

* 본 내용은 2024년 기준이며, 2025년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고시 예정

- 직접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매년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 인건비 기준단가의 등급별 기준금액을 근거로 산출함

[표 2]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2024년 기준)

등급	월 임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등급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책임디자이너
연구원	월 2,777,750원	디자이너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디자이너
보조원	월 1,392,671원	

* 1개월을 22일,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참여율에 따라 증감 가능하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초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 변경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입찰일 기준 3/100 이상 증감되는 경우
 - 국가기관 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 사업기간, 규모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경우

2.4.2.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 「공공디자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보상 대상 사업, 보상 대상자 선정, 보상 예산 및 기준, 보상 통지 등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기준, 보상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발주한 공공디자인 용역의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참가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5/100 이상이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위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함
- 보상 예산은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5/100의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균등하게 보상하고, 1인인 경우 50%, 공동입찰인 경우는 대표자에게 지급함

[표 3] 보상 기준

구분	적용 방법
보상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능력 평가점수 85/100 이상이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위 2인 이내 * 단, 보상대상 사업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보상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5/100의 금액 중 높은 금액 * 단, 사업예산과 별도로 확보
보상 예산 배분·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인 경우 균등 보상, 1인인 경우 50%, 공동입찰인 경우 대표사에게 지급

-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보상기준, 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보상통지, 제안서 활용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단계에 첨부되는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해야 함

2.4.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 「공공디자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의 인력으로서 크게 학력 및 경력, 기술자격으로 구분되며, 전문인력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기준

구분	전문인력 기준	실무경력
자격증	· 관련분야 기사 이상	1년 이상
학 력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전공자	· 관련학과 졸업자 2년 이상
	비전공자	· 비 관련학과 졸업자 4년 이상
고등학교 전공자	· 관련학과 졸업자 4년 이상	
	비전공자	· 고등학교 졸업자 5년 이상

- 자격증의 관련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종직무분야 중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를 기준으로 함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서비스·경험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컬러리스트
- 건설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조경, 도시계획
- 관련학과는 문체부 고시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의 [별표]를 참조함
 -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분야 교과목을 대학원 24학점 이상, 대학·전문대학 60학점 이상,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30단위 이상 취득한 경우 동등하게 평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심의를 통해 전문인력으로 인증된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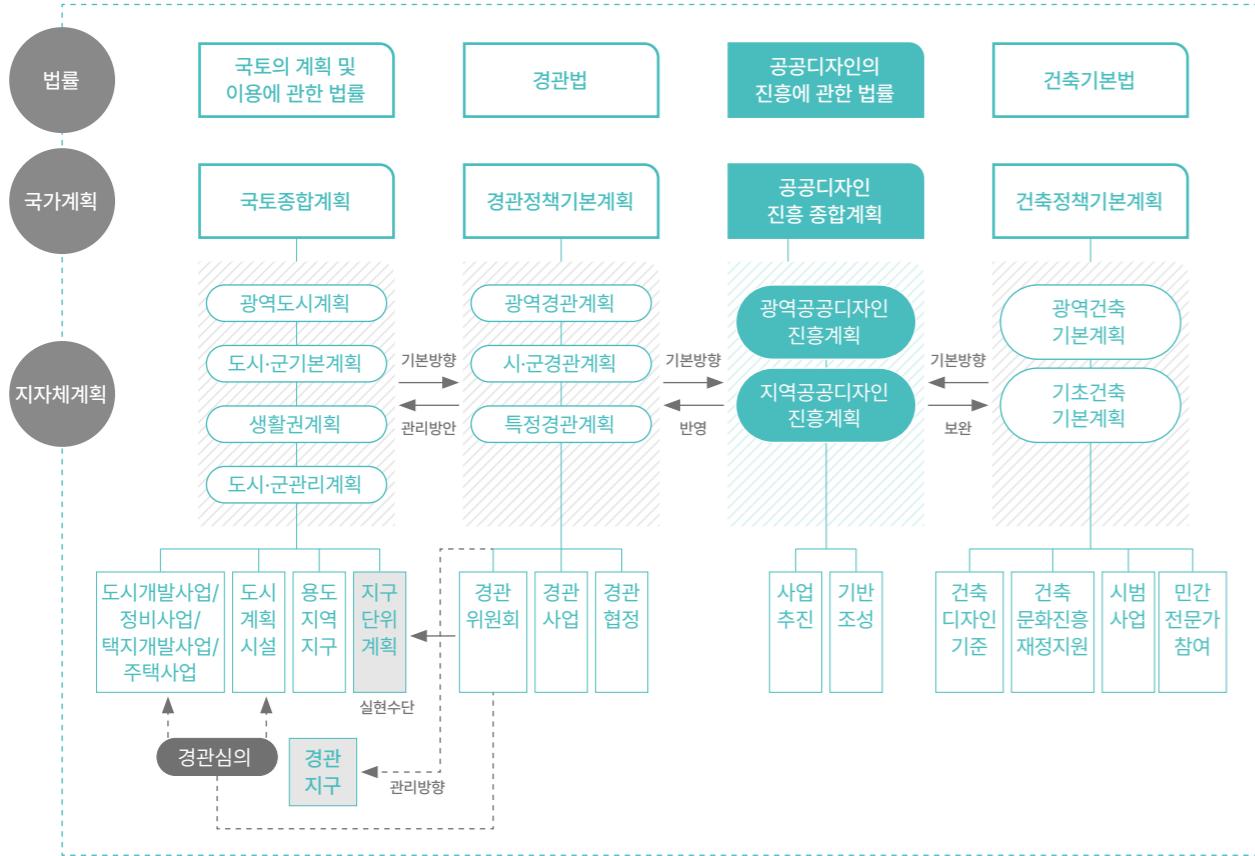


* 신청서류 및 전문인력 증명서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https://publicdesign.kr/)(<https://publicdesign.kr/>) 해당 페이지 참조

2.5. 관련법 체계

2.5.1. 관련법의 위계

- 공공디자인 관련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건축기본법」 등이 있으며, 개별 법령은 「공공디자인법」과 수평적 구조를 가짐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에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경관계획 수립 시 이를 먼저 반영함
- 또한 광역 및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의 권역, 축, 거점 등 경관구조를 검토하여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



[그림 8] 공공디자인 관련법의 위계(국토부 소관 중심)

2.5.2. 경관법과의 역할 관계

- 「공공디자인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경관요소별 관리계획에서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상충될 수 있음
-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은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지만, 입법 취지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고 관계를 정립해야 함
- 「공공디자인법」은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디자인 행위나 결과물이 중심인 반면, 「경관법」은 지역의 경관 자원의 보존·형성·관리를 위한 유도적 수법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접근방식의 차이이므로 큰 틀에서 「경관법」을 검토하고, 실행 차원에서 「공공디자인법」을 통해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 필요함

[표 5]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의 차이

구분	공공디자인법	경관법
목표	지역 정체성 구현	지역환경(특성) 형성 및 관리
법률적 성격	기획, 디자인 중심의 사업 지향	지침, 심의 중심의 제어 지향
지향점	창의적 시도와 독창적인 차별성 구축	전체적, 집합적 풍경의 관리
적용 범위	적용 대상의 상호연계, 배치 등(구체적 설계)	적용 대상의 계획방향 및 지침 제시 등(포괄적 개념)
위원회 운영	도시 브랜드와 문화정체성 전략 검토 (타 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불가)	기초적 품질의 제어 및 관리, 지침 준수 점검 (타 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가능)

2.6. 관련 행정규칙

2.6.1.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교통부)

-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제시함
-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 지원, 건축디자인의 단계별 기준(사전조사 및 사업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방식 결정 등) 등을 규정함

2.6.2.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을 제시함
- 10품목 44종의 편의, 경계, 조명, 보행접근, 사인시설 등의 세부 설치기준을 제시함

2.6.3.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
-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원칙, 공간별·시설별 가이드라인,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함

2.6.4.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
- 적용대상 및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시설별 가이드라인,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함

2.6.5.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의 공공디자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
- 영역별(공간특성별·국가유산별·관리주체별) 공공디자인 기본기준과 유형별 상세기준,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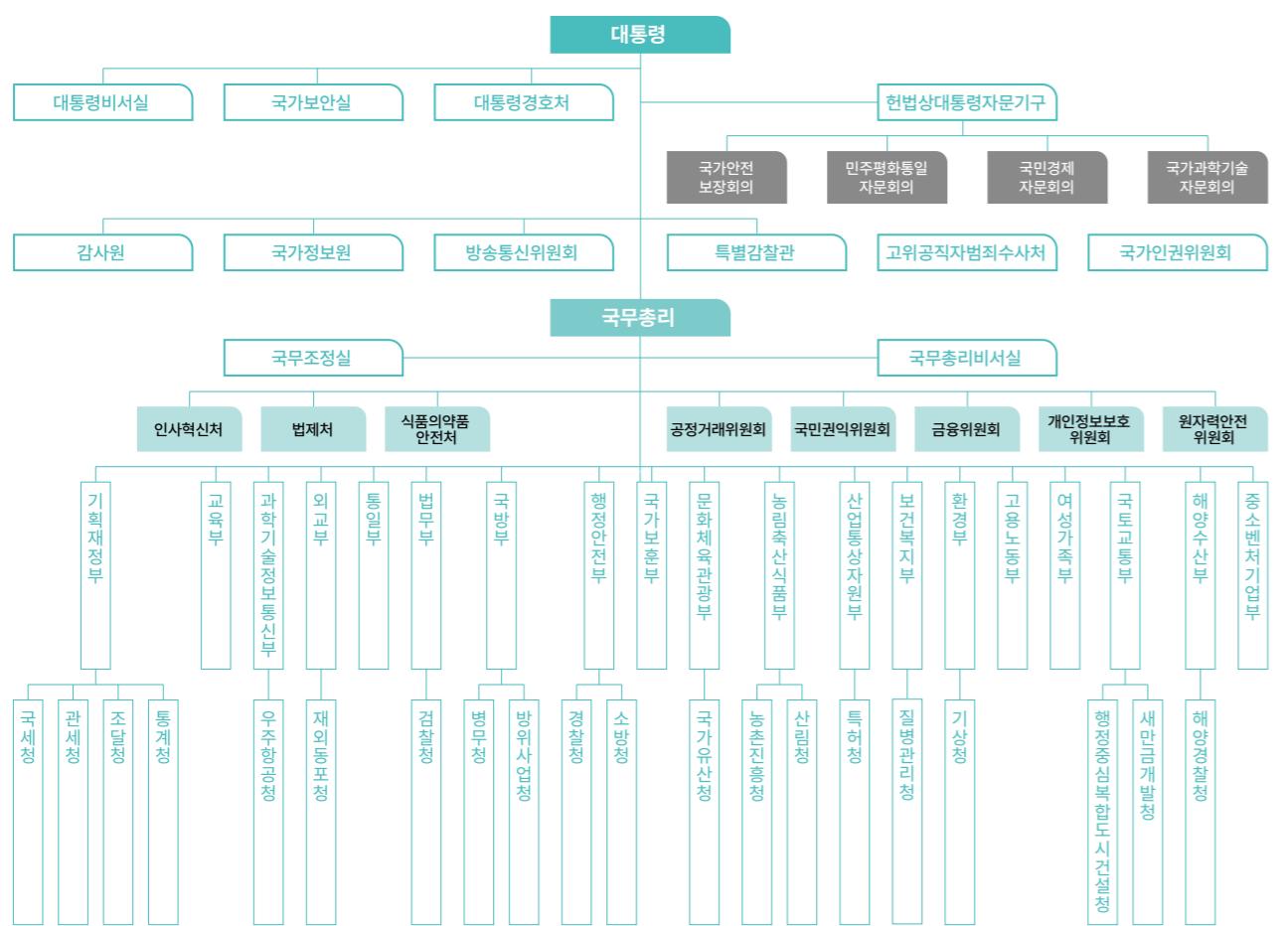
3. 공공디자인 추진 주체



3.1. 중앙행정기관

3.1.1. 기본 개념

- 중앙행정기관은 19부 5처 19청으로 구성되고, 이 중 디자인 관련 행정업무가 포함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4개부이며, 「공공디자인법」의 소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주관함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유산청 등에서 훈령 및 예규로 공공디자인 관련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3.1.2. 중앙행정기관별 추진 업무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회화·조각·사진·디자인·공예·건축 등 시각예술 분야 전반에 대해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과 법령 제정, 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의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 **소관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이 서비스디자인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주소생활공간과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추진함
 - **소관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또한 안전개선과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로컬디자인)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행하며, 소속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디자인 관련 업무를 추진함
 - **소관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에서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등에 관한 표준의 관리 및 보급 업무를 추진함
 - **소관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경관관리 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축물과 관련한 법적 사무를 주로 다룸
 - **소관 법률** 「경관법」, 「건축법」, 「건축기본법」 등

[표 6] 중앙행정기관별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

법령명(약칭)	목적	디자인 관련 주요내용	소관부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법)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발전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공공디자인의 정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법)		「산업디자인법」에서 다른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을 문화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디자인계의 혼선 발생 가능성이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명시된 '응용미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어 현재의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디자인의 개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저작권법		저작권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로 제2조 제15호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법)	지식기반의 경제적 발전	제품, 포장, 환경, 시각, 서비스디자인의 5가지 디자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촉진법		디자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디자인이 타 기술과 분야에 융복합하는 현 산업의 경향에 적합하게 맞물리는 법률로 디자인의 역량과 발전에 밀접한 관계와 영향을 줄 수 있음	

법령명(약칭)	목적	디자인 관련 주요내용	소관부처
건축기본법	지역성, 공공성, 기능성 창출을 통한 국토환경 개선	지역의 정체성, 기능성 및 공공성 등의 가치 창출을 위해 건축 영역에서 기획 및 설계하는 행위인 '건축디자인'에 한하여 디자인을 언급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경관법*		명시된 해당사업의 목적, 특성에 따른 디자인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을 교통약자로 분류함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추진 근거로 활용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생활환경 개선	사업내용에 따른 관할기관의 중복 및 혼선 발생 가능성 있음	행정안전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법)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보행환경개선지구 지구 지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이용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추진 근거로 활용됨	보건복지부
디자인보호법	창작활동환경의 투명성 제고	디자인의 산업적 정의에 따른 법령으로 20세기 디자인 관점에 묶여 있음	특허청

* 공공디자인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법령(사업 추진 근거 등)

[표 7] 중앙행정기관별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사업 현황

관련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을 통해 신진디자이너들의 공공디자인 전문역량 강화 지원
	공공디자인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국민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토론회·교육,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개최·운영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실태조사 등 제도·정책 연구
	공공디자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단위 공공디자인 사업의 품격 제고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행사 개최 및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공통의 사회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과제형 조성공모 사업, 공공디자인 산업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사업홍보를 통한 공공성 및 확장성 확보

관련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노후된 간판이나 돌출되어 위험한 간판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안전 뿐만 아니라 편의 증진, 지역 활성화, 기후 변화 대응 등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해 건축, 교통, 도시계획 관점의 종합적 보행환경 정비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로컬브랜딩)로 고유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분산된 자원과 개별 사업을 연결하여 생활권 전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접경권 발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을 구축하는 사업
국토교통부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 및 국토환경 디자인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민간 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건축·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운영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지원하는 사업

3.2. 지방자치단체

3.2.1. 기본 개념

-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합해 총 243개로 구성됨

[표 8]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

3.2.2. 광역 지방자치단체

- 대부분 도시, 건축, 경관 관련 부서 내에 공공디자인 또는 도시디자인팀을 두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와 경관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유니버설(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도 자체 혹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3.2.3. 기초 지방자치단체

-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204개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대신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를 1~2명이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보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 및 공공디자인 인식 정도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큰 편차를 보임

3.3.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3.3.1. 기본 개념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행정안전부가 총괄 감독하며, 지방공기업 422개, 지방출자기관 104개, 지방출연기관 758개로 총 1,284개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40개로 총 327개임

3.3.2.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 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카지노는 제외)에 한정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도시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지역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이에 해당함
-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기관 유형은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건설·투자, 관광, 문화, 의료원 등이 해당함

[표 9] 지방공기업 현황

구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자동차 운송	도시철도 공사	도시개발 공사	시설관리 공단	경륜공단	기타	계			
지방 공기업	122	104	25	1	6	16	91	1	56	422			
구분	건설·투자	관광	복지	에너지·환경	제조·유통	기타	계						
지방 출자	46	9	4	8	26	11	104						
구분	농식품	문화	복지 자원봉사	신용 보증	여성·청소년	연구원	의료원	장학	중소기업 진흥	지식정보 산업	테크노 파크	기타	계
지방 출연	20	178	69	17	45	64	30	176	29	24	18	88	758

*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www.cleaneye.go.kr/)' 참조(2024년 9월 기준)

3.3.3. 공공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에 따라 구분됨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으로 공공디자인 기반체계 구축과 진흥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함
- 그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AURI)에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함
- 최근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한국농어촌공사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을 접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표 10] 공공기관 현황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수	14	18	12	43	240	
대표 사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등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등	327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https://www.alio.go.kr/)' 참조(2024년 9월 기준)

4. 공공디자인 관련 디자인



4.1. 개요

- 상위법이 없는 유니버설(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어 공공디자인 관련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급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근거로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에서는 유니버설(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설명함
- 최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안전디자인과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디자인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함

4.2. 유니버설(범용)디자인

4.2.1. 배경

- 우리 사회는 남성, 여성,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 영유아 등반자 등 개인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방법이 필요함

4.2.2. 법률적 근거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상위법은 없으며, 제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있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됨
- 다만 관련 법령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개념은 포함됨

4.2.3. 유니버설(범용)디자인 개념

-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환경, 서비스 등의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 접근방식임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 등의 용어도 혼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어순화 차원에서 범용디자인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개념인 베리어 프리(Barrier-free) 또는 무장애디자인보다 적극적 개념임



[그림 10] 무장애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4.2.4. 무장애디자인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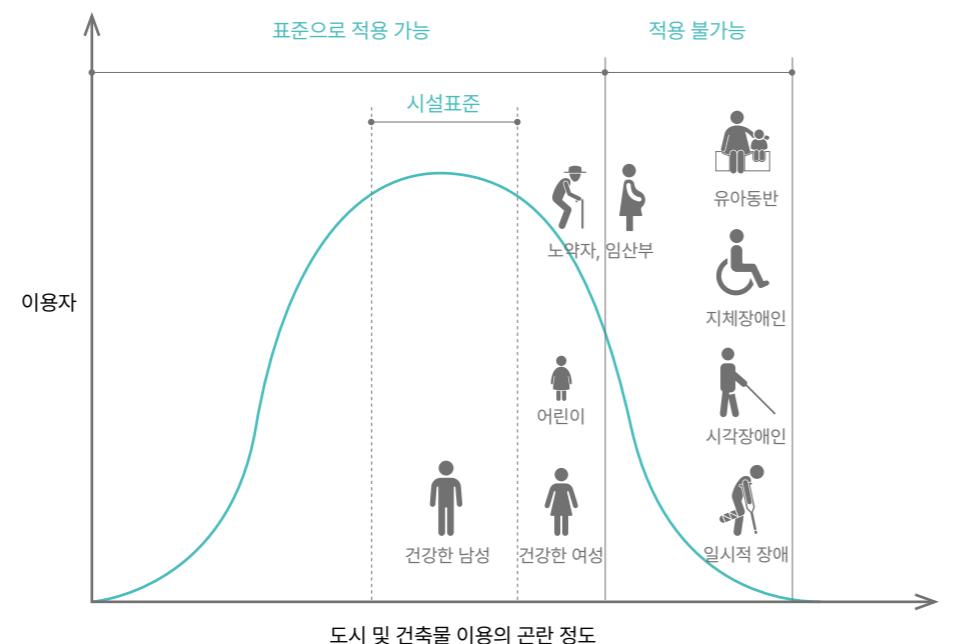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장애(베리어프리 ; Barrier-free)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되 물리적 장애물의 제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 및 심미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기술·기술적인 측면의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노인, 어린이,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디자인임

[표 11] 무장애디자인과 유니버설(범용)디자인의 차이

구분	무장애디자인 Barrier-free Design	유니버설(범용)디자인 Universal Design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장애물이 없는 물리적 환경 만들기 장애인에게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법규 및 명령에 근거한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사회적 환경 만들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철학이자 접근방법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의 장애물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 건축·공공시설물 등의 물리적 환경 및 행정·교육·복지 등의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장애를 제거한 접근성과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성, 접근성, 안전성, 보편성 뿐 아니라 경제성, 심미성, 친환경성까지 고려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 전용 화장실 건축물의 주출입구 단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사로의 설치 장애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넓은 보도 폭 및 유도블록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경사로 등 단차를 만들지 않는 계획 여행가방을 가진 사람도 쉽게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도

4.2.5.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적용의 필요성

- 2024년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751천 명이며, 이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약 14,154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27.4%를 차지함
- 또한, 2022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주민수는 2,258천 명으로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12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약자 비율은 30%를 상회함
- 이들은 건강한 남성, 여성을 표준으로 설계된 도시 및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설표준에 적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범용)디자인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그림 1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필요성

4.2.6.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와 원칙

-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 수용 가능한 디자인, 접근 가능한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의 유니버설(범용)디자인 4원리를 바탕으로 7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표 12] 유니버설디자인 4원리

4원리	내용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 (Supportive Design)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도움을 제공해 주는데 어떤 부담도 야기시키지 않음
수용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상품이나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킴
접근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험적인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킴
안전한 디자인 (Safe-oriented Design)	안전사고 등의 기준 문제를 제거시키기 위해 개선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함

[표 13]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7원칙	내용
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모든 사용자가 디자인의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용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사람들마다 다른 각양각색의 선호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디자인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Intuitive Use)	경험, 지식, 언어 등 사용자 수준에서 상관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주위의 상태 또는 사용자의 지각능력에 상관없이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
오류에 대한 관대함 (Tolerance for Error)	위험과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사용자가 최소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 및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신체크기, 자세, 이동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고, 손이 닿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크기와 공간으로 디자인

4.2.7.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가이드라인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립공원공단 등의 기관까지 확대되고 있음

[표 14]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주관기관(발간연도)	가이드라인명	주요내용
중앙 행정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	문화시설,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 운영에 참여하게 될 건축가, 디자이너, 시설 운영자들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화재안내판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차별없이 쉽고 편리하게 우리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공공 기관	국립공원공단 (2012) 국립공원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립공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하기 위해 공원진입 공간과 탐방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특성에 맞도록 보행공간, 공공건축물, 주차장, 쉼터 및 광장, 야영장, 안내표지시설 등의 세부지침을 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색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반인 뿐 아니라 고령자 및 색약자 등 다양한 색각을 지니는 모든 입주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 내부공간, 사인디자인, 안전디자인에 대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지방 자치 단체	경기도 (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의 5개 영역에 대해 법적 기준과 경기도의 권장기준을 제시
	서울시 (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2010년부터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보도, 공원 등 단일시설별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 영역의 29개 세부항목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개발
	성북구 (2017) 성북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개념 제시 후 공공건축(접근공간, 이동공간, 서비스공간), 공공공간(보도, 기타공간), 공공정보(안내사인, 공공문서) 별로 세부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한 후 재료 및 마감방법에 대해 설명
	순천시 (2018)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가로, 공원, 공공건축물, 공공정보매체를 대상으로 7개 영역, 3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준과 체크리스트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공원 및 광장, 공공시설, 교통시설, 공공정보매체를 대상으로 의무/권장기준을 시설별 적용 규모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체크리스트 개발
	경상남도 (2020)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서비스, 공공정보매체의 5개 영역에 대한 디자인 기준과 각 영역별 체크리스트 개발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19)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교육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외부공간, 내부공간, 위생공간, 수직이동설비, 안내설비, 기타공간으로 구분하여 제시

4.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4.3.1. 배경

-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하고 있으나, 낙후된 원도심 등을 대상으로 범죄유발심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디자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작됨

4.3.2. 법률적 근거

- 상위 국가 법령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함
- 관계 법령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이 있음
-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표 1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계 법령

법령	조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30조의 3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예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2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0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 (건축물의 범죄예방)

4.3.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념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 등 범죄에 대한 물리적 도시환경을 조성·개선하고, 이에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 위험을 증가시켜 범행의 기회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종합적 범죄예방 전략을 말함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상 셤테드(CPTED)로 표현하며, 1세대 셤테드(물리적 환경 개선) 도입 이후 2세대 셤테드(사회적 관계개선)를 지나 3세대 셤테드(문화적 환경 조성) 까지 개념이 진화되고 있음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란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셤테드 원리를 적용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전한 삶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을 말함

4.3.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 경찰청에서 제시한 한국형 셉테드와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을 고려하여 5대 원칙으로 규정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정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원리는 크게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과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라는 두 가지 부가원칙으로 등 구분될 수 있음

[표 1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5대 원칙

5대 원칙	세부 내용	예시이미지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일반인의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 - 주변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환경 설계 - 조망권 확보를 통한 사람의 눈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투시형 담장,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중앙배치 등)	 
접근통제 (Natural Access Control)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 - 범죄 유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여 범죄예방 - 보안설비, 공간배치, CCTV를 이용한 심리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Territoriality)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가상의 영역 설정 - 공공/사적공간을 구별하고 대지 경계와 울타리, 표지판 등 물리적 특징을 강화 - 사각지대 및 고립지역의 개선	 
활용성 증대 (Activity Support)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 및 자연스런 감시 강화 - 커뮤니티 활동을 조성하여 주민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 - 휴게시설, 친목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유도	 
유지 및 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활용 - 도시 가로미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4.3.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진행 시 참고해야 할 가이드라인 또는 관련 기관의 지침은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시작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학회, 각 시·도·군·구 등 최근 많은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표 17]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주관기관(발간연도)	가이드라인명	주요내용
중앙 행정 기관	국토교통부 (2013)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최근 각종 범죄의 발생 증가에 따라 안전한 건축을 위해 건축 설계 시 반영할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CPTED) 가이드라인 마련 입찰, 발주, 용역, 건축물 설계, 성능 평가 및 건축 심의에 활용
	법무부 (2015)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표준매뉴얼	관련 사례 예시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개요를 밝히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단계별 실행에 대하여 준비단계 > 공모/선정단계 > 계획/시공단계 > 평가단계로 분류·분석하여 제시
공공 기관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2015)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무자와 공무원이 건축,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다 쉽게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북
	LH공사 (2015) 주택단지 안전 가이드라인	CPTED, 무장애, 소방 등에 산재된 주택안전 관련 설계기준 등을 일원화하고 관련 법규를 명시하였으며, 전체 구성은 방범, 화재, 생활 3가지 안전분야로 구성 현상설계지침에 포함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때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설계에 적용할 예정
지방 자치 단체	인천광역시 (2013)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CPTED 원리를 4가지 기본원칙(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장소의 이미지)으로 재정립 후 취약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사항을 제작하였고, 유해 환경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CPTED 체크리스트를 제작
	서울특별시 (2013)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노후된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서 우선 적용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산
경기도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매뉴얼 (2013)	8개 설계요소별 표준 가이드라인, 공간 유형별 매뉴얼, 시범사업 대상지 기본계획, 체크리스트 활용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뉴얼이 적용된 곳에는 「경기도지사 안전마을 인증제도」 도입 검토
	양산시 (2013) 범죄예방 관련 환경설계지침	양산시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및 일반적인 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시행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지침 역할 수행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4)	CPTED 5대 원리를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주거단지를 주요 적용범위로 제작
	청주시 (2014)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지구단위계획과 주거지역, 공동주택, 상업지역, 공원, 학교, 도시기반시설물의 개별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5)	국내·외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분석 및 충남의 여건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으며, 충남 공공디자인조례 내 디자인 대상 시설물과의 정합성을 고려 범죄 주요 발생지역인 도로, 단독주택, 아파트 및 주요 범죄 유형(침입범죄, 절도) 등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 구성
	수원시 (2016) 수원시 안전한 골목 만들기 10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핵심원칙인 10원칙을 기준으로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적용요소 및 실행지침 적립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2016)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춰 건축물, 조경 및 녹지, 공공시설물, 방범시설물, 조명, 도로 및 가로, 도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CPTED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김해시 (201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을 목표로 건축물, 공동주택, 도로, 도로기반시설, 조명, 조경 및 녹지, 방범시설물로 분류하였고 추가로 시범사업 대상지 1개소를 선정해 기본 대안을 제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2016)	용도지역별 물리적 현황분석을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 및 녹지지역 분류에 따라 CPTED 적용 기준 도출 및 범죄현황분석 실시
	세종특별자치시 (2019)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 2017년 기준 총 7개 대분류 52개 시설 중 대전시는 2017년 기준 36개 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 각 시설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주관기관(발간연도)	가이드라인명	주요내용
지방 자치 단체	논산시 (2019)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수립과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10개소의 시범사업지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제안한 과업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각종사업에서 도시의 안전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추진
	경기도 (2020)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2013년 수립된 1차 계획에 이어 특화기획, 거버넌스, 사업 및 관리의 4대 실행과제를 2차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수립하고, 20가지의 실행원칙과 공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

원칙	내용
신뢰성(Reliability)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하여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즉각적 피드백(Feedback)	사용자가 수행하는 행위가 올바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디자인
중복 안전 장치(Redundancies)	실수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디자인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참여 (Stakeholder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디자인을 연구 개발하는 디자인

4.4. 안전디자인

4.4.1.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디자인 방안이 모색됨
- 폭염과 태풍, 침수, 산불 등의 천재지변을 비롯해 다중밀집공간에서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4.4.2. 안전디자인 개념

- 제품·시설·공간을 대상으로 피해 최소화 또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방법을 말함

4.4.3. 안전디자인 원칙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발한 '서비스디자인으로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에서 좋은 안전디자인 구현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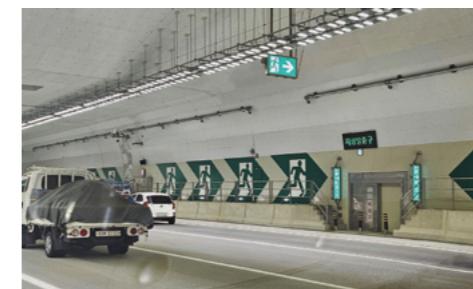
[표 18] 좋은 안전디자인 구현을 위한 10대 원칙

원칙	내용
사고방지(Prevention)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디자인
위험 가시화(Visibility)	잠재된 위험 요소를 드러내어 사용자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인체공학적 설계(Ergonomics)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디자인
안전행동유도 및 에러 최소화 (Nudging and Error Minimization)	인간의 심리적 조건에 대응하여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디자인
사용 단순화(Simplicity)	사용방법이 직관적이고 복잡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명확성(Legibility)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스템이 이해하기 쉽게 작동하는 디자인

4.4.4. 안전디자인 지침서

- 행정안전부, 소방청에서 지진 및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습이 필요한 대피 매뉴얼이라는 한계가 있음
- 서울 안전디자인 매뉴얼(서울시, 2022), 안전디자인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한국디자인 진흥원, 2023)은 산업안전 등 특수 상황에 국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4.4.5. 안전디자인 적용 사례



[그림 12]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그림 13] 고속도로 공사중 차선표시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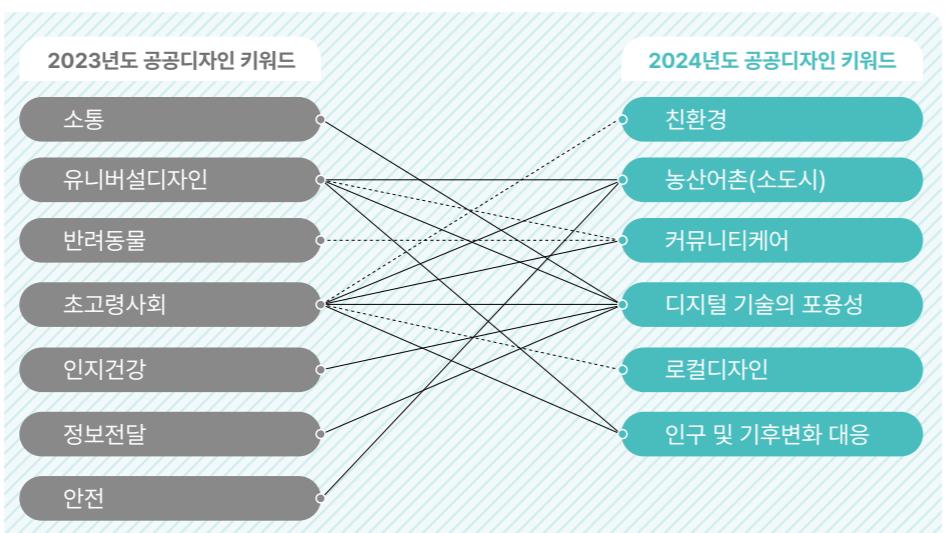
[그림 14] 을지 트윈타워 방재체계

5. 공공디자인 동향



5.1. 국내 동향

- 공공디자인 관련 나라장터 입찰정보 4,224건과 국내학술논문 3,532건의 분석 결과 2023년은 유니버설디자인, 초고령사회, 인지건강, 안전 등이 주요 키워드로 추출되었으며, 2024년은 친환경, 소도시, 커뮤니티케어, 디지털 기술의 포용성, 로컬디자인, 인구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이 주요 키워드로 추출되어 공공디자인의 트랜드가 인구소멸 이슈와 맞물려 농산어촌 중심의 지역사회 및 건강한 지역사회, 디지털 편의, 도시 브랜딩 등의 방향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음(2023년 1월 초~2024년 11월 말 기준)



[그림 15] 공공디자인 이슈 키워드 분석

5.1.1. 로컬디자인 개념 도입

- 총인구 감소와 더불어 인구 이동성 증가 추세로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에 지역의 고유성이 지역 방문과 정착을 활성화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음
- 수도권에 비해 자원량은 부족하나 여유로운 주거환경, 잠재력 높은 역사·자연환경, 저렴한 임차료와 매력적인 감성 요소 등 수도권과 다른 고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의 강점을 살려 지역으로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으로 추진됨

-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지역특성을 살려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
- 대표적으로 양양 서피비치(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일대)는 군사보호구역을 행정규제 완화, 해양레저 특화 등으로 서핑문화 성지로 탈바꿈하였으며, 매년 방문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기를 부여함



[그림 16] 양양군 서피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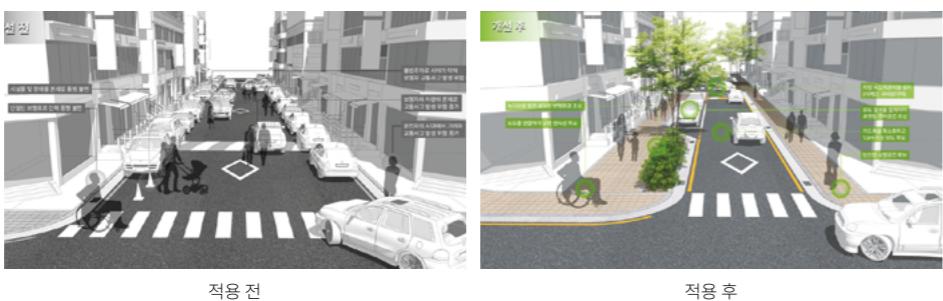
5.1.2. 사회공헌,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민간기업 참여

- 기업이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접목하는 현상이 증가함
- 국가기관 등의 본질적 정체성이 공공성을 통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마주한 사회문제를 기업의 전문성이나 혁신의 결과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함
- 구체적으로 실업 및 고용, 주거환경, 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함

5.1.3. 디자인 협업 확산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공공디자인을 매개로 부처 간 협업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음
- 국가 단위의 공공디자인 품격을 제고하고, 각 부처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연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부처 컨설팅이 대표적 사례임

-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의 지침인 '보행 안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보급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함



[그림 17] 보행 안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전·후 비교

5.1.4. 디지털 기술의 포용성 강화

-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관광객 등 디지털 약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각종 매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요구됨
- 최근 약시자를 고려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 초기 화면의 단순화 및 주문 키오스크의 화면 구성 등에서 디지털 기술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그림 18] 약시자를 고려한 금융기관 ATM화면 및 주문 키오스크

5.1.5. 농산어촌의 공공디자인 접목

- 저출산·고령화 및 자연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농산어촌의 고립화가 심화되고, 청년층의 지역전출로 인한 생활 인프라가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됨
- 지방소멸 이슈에 더불어 농산어촌 등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자 최근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포용적 공간디자인 전략과 적용방안으로 공공디자인이 접목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으로 농어촌 공간개발을 설정하고, 농촌공간계획처 농촌공간디자인부를 두어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는 등 조직의 변화가 나타남

5.1.6. 새로운 디자인 개념의 등장

- 바이오플릭(Biophilic)은 도시화와 코로나 19사태 등 실내공간 생활의 증가에서 나타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어우러지기 위한 디자인 방법을 뜻하며, 자연과의 교감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 트렌드임
- 바이오플릭을 구현하는 요소로는 자연 채광과 조명, 소리, 바람, 색상, 향기, 천연재료로 만든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이 있으며, 기존 도시기반시설 위에 자연요소를 도입하거나, 도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 케어시티(Care City)는 도시 내 여가공간의 확장 및 거리의 힐링공간화가 확산되고, 내 집 주변에서 산책하거나 독서, 사색을 즐기는 등 생활 환경에서의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케어시티(care city)의 관점이 강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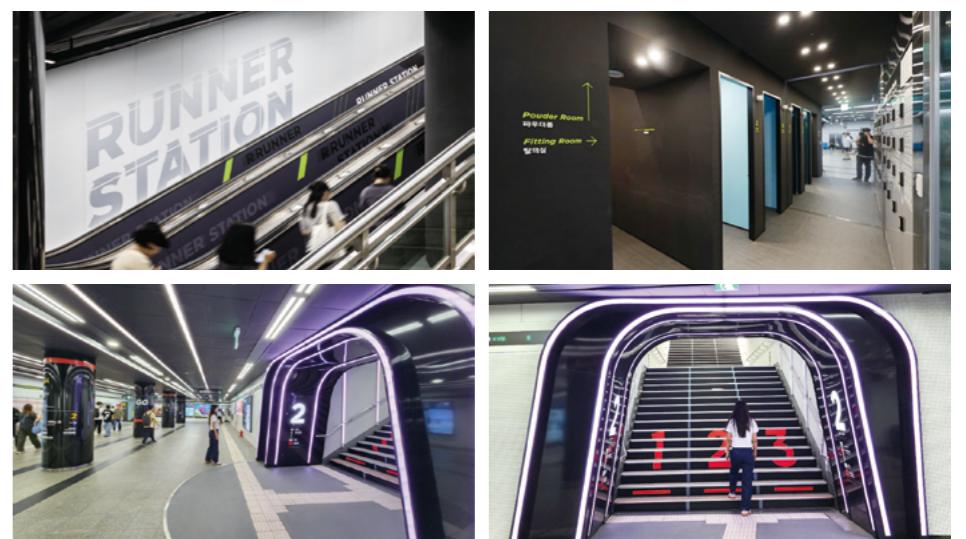


[그림 19] 2024 서울정원박람회
(광진구 뚝섬공원)



[그림 20] 편디자인을 적용한 가벼운 이동형 가구
디자인으로 사색의 공간 제공(종로구 청계천)

-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는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트렌드로 러닝 및 걷기를 주제로 한 모임의 급격한 증가와 연결되는 경향성을 보임



[그림 21] 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지하철역(5호선 여의나루역)

5.2. 국외 동향

5.2.1. 웰빙을 위한 공공공간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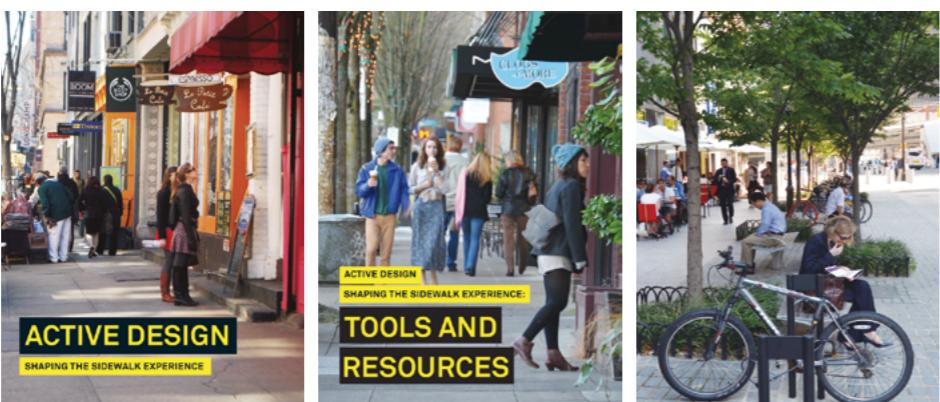
- 공중 보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및 환경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공간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품질 공공공간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신체적 건강, 정신적 웰빙, 사회적 유착, 환경적 회복력을 위해 공공 영역을 계획, 설계, 유지 및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공평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함



[그림 22] 웰빙을 위한 공공공간의 활용

5.2.2. 보행공간의 경험디자인 강화

- 보도의 연결과 보행환경의 개선으로 도시공간을 변화시켜 신체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육체적 활동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건강을 증진하고 실체 활동을 일상생활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그림 23] 액티브 디자인

5.2.3. 기후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 향상

- 홍수 등 기후 변화에 따라 복원력(Resiliency)을 고려한 공공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물 등 공공재를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공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그림 24] 기후 복원력 디자인 가이드라인

III. 공공디자인 행정 구축하기

-
1. 조례 제·개정 48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55
3.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 69

1. 조례 제·개정



1.1. 조례 개요

1.1.1. 기본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법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됨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음

1.1.2. 제·개정 유형

-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원의 의원 발의, 주민 발의가 있으나, 통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의해 제·개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조례의 제정 절차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5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면 단체장이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함

1.2.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2.1. 조례의 필요성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위해 제정되므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 관계 법령은 「공공디자인법」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공공디자인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근거로 해야 함
- 특히 사업예산 편성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며,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여야 함

1.2.2. 조례 제정 현황

- 공공디자인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모두 제정하였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 204개가 제정하여 총 90.3%의 제정률을 보임
- 공공디자인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제정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100%의 제정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남

[표 19]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2024. 11월 말 기준)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전북	제주	
광역	개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7/1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	개	25/25	10/16	6/9	10/10	1/5	5/5	4/5		31/31	10/11	15/15	22/22	17/22	18/18	17/18	13/14		204/226
	%	100.0	62.5	75.0	100.0	20.0	100.0	80.0		100.0	90.9	100.0	100.0	77.3	100.0	94.4	92.9		90.3

1.3.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1.3.1. 보급 배경

- 「공공디자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중 유니버설(법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상위 근거법 없이 개별 조례로 제정되는 사례가 발생함

[표 20]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정 현황(2024. 1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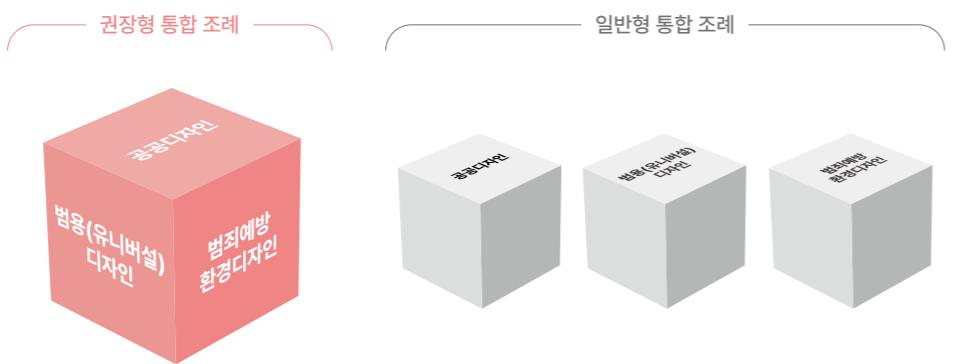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전북	제주	
유 니 버 설	광역	1/1	1/1	0/1	0/1	1/1	0/1	0/1	1/1	0/1	0/1	0/1	0/1	0/1	0/1	0/1	0/1	1/1	6/17
	기초	7/25	2/16	0/9	0/10	2/5	0/5	0/5		10/31	0/11	1/15	1/22	1/23	1/18	2/18	1/14		28/226
범 죄 예 방	광역	1/1	1/1	1/1	1/1	1/1	0/1	1/1	1/1	1/1	1/1	0/1	1/1	1/1	1/1	0/1	1/1	1/1	14/17
	기초	18/25	16/16	9/9	10/10	4/5	0/5	3/5		17/31	10/11	15/15	20/22	20/23	16/18	15/18	12/14		185/226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 공공디자인 추진 기반이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따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0년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이하 "통합 조례"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급함

1.3.2. 구성

- 통합 조례는 공공디자인과 유관 분야인 유니버설(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와의 조합에 따라 권장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함
 - **권장형** 공공디자인을 기본으로 3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 **일반형** 3개 조례를 각 장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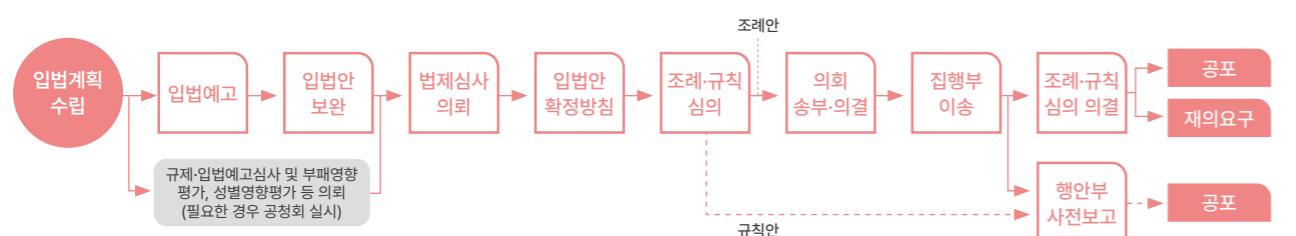


[그림 25] 권장형과 일반형 통합조례 개념도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별도로 유니버설(범용)디자인 조례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합하거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별도로 기존 조례를 유지하도록 권장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통합 조례를 기준으로 계획의 수립, 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1.4. 자치법규 입법 절차

1.4.1. 제정 절차 흐름도



[그림 26] 조례·규칙 입법 흐름도

- **입법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입법계획의 방침을 수립하고, 법무부서의 예비심사를 요청함
 - *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규칙의 제·개정 여부를 판단하여 같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서와 협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함
 - 조직(조직부서), 예산 수반(예산부서) 규제,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및 여성정책부서) 등
- **입법예고** 공보, 인터넷 누리집, 신문·방송 등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일 이상 게재함
 - *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이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청회 개최 검토
- **입법안 보완** 부서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확정함
- **법제심사 의뢰** 확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함
 - 방침결정 문서, 사전승인·협의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등 결과, 입법예고 결과, 관계법령 발췌서 등 첨부
 -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형식심사, 예비심사, 본심사로 나누어 진행 가능
- **입법안 확정 방침** 법제심사 등을 통해 확정된 입법안을 마련하고, 조례·규칙 심의를 위한 방침결재를 받음
- **조례·규칙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확정함
 - * 시행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로 종결되며, 행안부 및 시·도에 사전보고 후 공포
- **의회송부·의결** 지방의회로 부의할 조례안은 사전에 공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서 검토 후 본의회에서 의결함
- **집행부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함
- **조례·규칙심의 의결**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함
- **공포 및 재의요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된 조례안을 집행부가 동의하는 경우 행안부 및 시·도에 사전보고 후 공포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함

1.4.2. 단계별 업무 처리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업무매뉴얼(2022년판)'을 참고하여 단계별로 업무를 처리함

[표 21] 조례 제·개정 업무 프로세스

절차	처리주체(부서)	업무처리 내용	비고
① 입법계획 수립 (기본방침 결정)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부서에서 입법안 마련(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 법무부서에 예비심사 요청 	
②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디자인 → 관련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협의 관련부서 협조 요청(예산, 조직부서 등) 규제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및 여성부서 등) 	
③ 입법예고 <20일 이상>	디자인 →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보,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조례 제·개정 사항 	필요한 경우 협의기간 중 공청회 실시
④ 입법안 보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의견 반영 후 수정 	
⑤ 법제심사 의뢰	디자인 →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된 입법안을 법무 관련부서로 심사 요청 	방침결정 문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등 첨부
⑥ 입법안 확정 방침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입법안 수정 확정된 입법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방침 수립 	
⑦ 조례·규칙심의회 의뢰	디자인 →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규칙심의회 일정 확인 후 안건 상정 의뢰 소관업무 실·국장 제안설명 시나리오 작성 	
⑧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의 의결 결과 모니터링 	
⑨ 의회 송부·의결	법무 →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담당부서에서 조례안 사전 공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조례안 검토 상임위 검토 후 본의회 의결 	의결과정 모니터링
⑩ 집행부 이송 <의결 후 5일 이내>	지방의회 →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확인(수정사항 등) 	
⑪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사항 모니터링 	
⑫ 행안부/ 시·도 사전보고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사전보고 현황 모니터링 	
⑬ 공포 또는 재의요구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시행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를 행안부 및 시·도에 사전보고 후 공포

1.5. 체크리스트

- 조례 제·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함

[표 22] 조례 제·개정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입법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의 필요성(배경, 현황 및 문제점), 입법 내용(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고,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계획에 조례안 초안을 첨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제안)이유, 주요 내용, 주요 토의과제, 예산 조치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요강을 자치법규 입안형식(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본칙, 부칙)에 따라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위임 자치법규안에 대한 참고 조례안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포일과 시행일을 달리할 필요성과 재의요구 종료 후에 공포하는 것을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안 초기단계부터 입안 형식 및 기준, 주요내용의 적법성, 추진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법제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 	<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거쳤는가? (조직 관련 - 조직부서, 예산수반 - 예산부서 등)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법령에 근거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계획에 규제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이전에 해당 부서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입법예고 및 입법안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보, 인터넷 누리집, 신문·방송 등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렸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청회 체크리스트 추가 검토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입법예고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와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보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담당부서로 법제심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심사를 요청하는 문서에 방침결정 문서, 사전승인·협의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등 결과, 입법예고 결과,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첨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의 법제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받은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을 확정한 방침을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법제담당부서에서 개최하는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을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이전 예비심사를 요청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비심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의뢰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설명할 실·국장의 제안설명 시나리오 및 예상 질문답변을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를 모니터링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의회 송부·의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조례안이 사전 공고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조례안의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모니터링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의회로 회부된 조례안의 의결결과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집행부 이송	본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안의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포 및 재의요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법제담당부서에서 공포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재의요구된 경우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2.1. 지역위원회 설치 개요

2.1.1. 기본 개념

- 「공공디자인법」에서 지역위원회 설치 목적을 일부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설치함
-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업무 안내서는 이 가운데 권장형 통합 조례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정의함

2.1.2. 지역위원회 설치 목적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15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설치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급한 통합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별표 1]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표 24 참조)
 - 공공디자인 사업[별표 2]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표 25 참조)
 - 「시·도 / 시·군·구 경관 조례」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단, 야간경관 시설은 제외)
 -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23] 통합 조례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 입체교차 ▪ 자전거도로 ▪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응벽(터널전면부 응벽시설 포함) ▪ 방음벽 ▪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 가로등 ▪ 트レン치, 맨홀 ▪ 제설시설
도시철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지하철안내표지판 ▪ 환기구(흡·배기구) ▪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갑문 ▪ 하천 제외지 구조물(응벽, 석축 등)
전원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보관대 등

2. 기타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전함 ▪ 공중전화부스 ▪ 무선전화기지국 ▪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 우체통 ▪ 통신안테나 ▪ CCTV 지주 ▪ 전신주 ▪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선 방송 ▪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안내소 ▪ 관광안내도 ▪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보호덮개 ▪ 가로 녹지대 ▪ 가로 화분대 ▪ 분수대 ▪ 벽천
환경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지통 ▪ 환경미화원 대기소 ▪ 공중화장실 ▪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안내표지 ▪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 정류소 ▪ 택시 표지판 ▪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 교통 감시시설 ▪ 블라드, 보호펜스 ▪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허가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 유람선, 수상택시 ▪ 광장 ▪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용대상)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 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OO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표 24] 통합 조례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분류	세부항목
인구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 쟁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 그 밖에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돋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	▪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역	▪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니버설(범용)디자인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 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	▪ 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역	▪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	▪ 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2.2. 지역위원회 운영 등

2.2.1. 지역위원회의 구성

- **위원 수** 당연직과 위촉직(분야별 전문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 및 위촉분야** 위원장은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함
 -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시·도 /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TIP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가급적 부단체장 또는 디자인 관련 부서의 실·국장하여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촉직 위원(민간전문가)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전문성 강화(민간전문가에게 개최계획 수립 결과를 받는 것은 지양) ▪ 지방자치단체 상황이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의회 추천)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대표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우선으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 **임기** 당연직인 경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인 경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

- **양성평등** 위촉직 위원은 특정한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

- **기타** 통합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외부 공개모집 등 지역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에 규정함

2.2.2. 지역위원회의 기능

- **심의·자문대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사업 추진 및 지원, 추진협의체 자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지역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행한 안건 등을 대상으로 함

* 심의 또는 자문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게 규정

TIP 심의·자문 대상 설정

- 공공디자인 관련 타 조례에서 심의·자문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토록 한 경우 심의·자문대상으로 포함
 - * 타 조례 예시 : 유니버설(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우수공공시설물디자인 인증 등
- 법에서 정한 공공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이외에 공공공간도 조례에 대상으로 포함하는 추세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통합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심의·자문 기준**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디자인원칙은 다음과 같음
 -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통합적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할 것
 -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 주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
- **심의신청 시기**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신청하되,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 **심의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하거나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나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시·도 / 시·군·구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 **예외 적용** 조례에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도 / 시·군·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도 / 시·군·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을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민간분야 사업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유도함
- **심의 결과 반영** 필요한 경우 심의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따로 규정할 수 있음

2.2.3. 지역위원회의 운영

- **소집시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함

TIP 위원회 운영

- 심의·자문 요청되는 안건의 수에 따라 정하되, 일반적으로 월 1회 개최, 1회당 3~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
- 다만, 심의·자문 요청되는 안건의 수가 많을 경우 월 2회, 1회당 6~10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예시 : 서울시, 경기도 등)

- **개의 및 의결요건** 위원장이 ○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사무처리**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소관부서 과장 또는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함
 -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가능
 -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속기사가 회의록 작성 가능
- **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명 이상 ○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며,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

TIP 소위원회 의결 처리

-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처리하거나 위원회에 보고 또는 의결로 처리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척**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 또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기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불가
 - **회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으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해촉해야 함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심신장애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얻은 경우
 -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절차 등**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의는 두 차례로 한정함
 - 접수된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 후 보완 요청 가능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추가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의 안건 상정)
- **의견청취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토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음

TIP	담당자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자문 신청부서 담당자 및 관리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안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련 부서의 입장에 파악하는데 효율적 	

-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운영세칙**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고, 내부 방침으로 정함
- 기타** 통합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전검토, 서면심의 등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 정함

TI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0명 이상의 위원을 매회의마다 지정하여 개최 계획 수립 후 개의 *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계획을 민간인에게 결재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원장은 기급적 담당사무 실·국장으로 하는 것을 권장 심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위원은 개최 전에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 소위원회 구성의 최소, 최대 인원규정은 조례에 포함시키되, 위원장 포함 5명 내외가 적정 유의사항 공공디자인법에서 위원회의 대행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는 없으나,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는 가능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O) 	

- 위원회 대행 운영** 서울시의 경우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함

[표 25] 경관위원회 대행 심의대상(사회기반시설)

시설명	관련 법률	경관심의 대상	비고(금액)
도로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시설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도시철도시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	하천법	제2조 제3호 하천시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전원설비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발전·송전 및 변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 변압탑 등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자전거 이용시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시설명	관련 법률	경관심의 대상	비고(금액)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야간경관시설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2.4. 지역위원회의 심의·자문 사례

- 예시** 서울시 상권안내 조형물 표지판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의 사례를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이 설명될 수 있음

[표 26] 위원회 심의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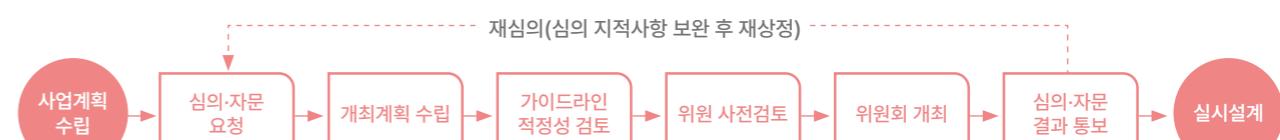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

- 조형물의 크기가 과대하여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축소
-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폴리싱 가공, 고채도 색상 사용과 유지·관리가 어려운 매쉬타공,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날카로운 모서리, SUS 재료 사용 등을 지양

2.3. 지역위원회 운영 절차

2.3.1. 지역위원회 운영 흐름도



- * 안건 상정 요청 이전 심의도서 등을 점검하는 사전협의를 통해 재심의 비율 감소 가능
- **개최계획 수립** 조례로 정한 위원회 개최 인원을 확보하고 상정될 안건을 확정하여 위원장에게 결재를 요청함
- **가이드라인 적정성 검토** 심의·자문 요청된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의 적정성 등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함
- **위원 사전검토** 위원회 회의에 참석 예정인 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회의 당일 사전검토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TIP 사전검토의 필요성

- 사전검토의견서를 심의 시 위원들에게 제시하여 중복의견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정책방향과 상이한 의견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율적

- **위원회 개최** 온라인 사전검토를 통해 제시된 위원회 의견 중 미반영 또는 부분반영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함
- **결과 통보** 위원회 심의·자문 과정을 거쳐 의결된 결과를 사업부서로 통보하고, 사업부서는 의결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 재심의 의결된 안건의 경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 안건으로 재상정

2.3.2. 심의·자문 도서 작성방법

- **표지**
 - 사업명, 제출일, 발주처(재심의 안건인 경우 사업명에 '재심의' 표기) 표기
 - 표지 중단부에 사업명, 하단부에 발주처(담당부서) 표기
- **사전 검토의견 조치계획**
 - 심의 접수 후 위원 사전검토의견을 받아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으로 표시하며, 해당 페이지를 기입
- **목차**
 - 사업개요, 대상지 현황분석, 디자인 방향, 디자인 기본계획, 부문별 상세계획 순으로 작성



[그림 28] 심의·자문 도서 작성 예시 1

● 사업개요

- 사업 범위 및 기간, 대상지 현황, 설계 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 현황조사 및 분석

- 지도를 첨부하고 위치도, 입지여건 및 접근성, 대지분석, 대상지 주변 현황여건 분석 등

● 관련 법규 및 계획

- 사업 관련 계획 및 법규 조사·분석,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검토, 대상지 지적현황 등



[그림 29] 심의·자문 도서 작성 예시 2

● 디자인 방향

- 디자인 개발 방향, 유사 사례분석, 디자인 컨셉 등

● 디자인 기본계획

-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뮬레이션 또는 이미지 제시

● 기본 도면

-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자료 제시



[그림 30] 심의·자문 도서 작성 예시 3

● 상세디자인 계획

- 심의·자문대상의 구체적 디자인 계획 및 시뮬레이션 이미지(조감도 등) 제시

*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오버랩(Overlap)된 디자인(안)을 결과물로 제출

● 배치계획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구조,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연계방안 검토

● 색채 및 재료계획

- 재료 및 색채계획의 방향과 적용방안 기술



[그림 31] 심의·자문 도서 작성 예시 4

○ 사인계획

- 공공공간, 건축물의 경우 실내·외 전체에 대한 안내체계 검토

○ 유지 및 관리계획

- 프로그램 및 유지관리계획, 주민협의체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그림 32] 심의·자문 도서 작성 예시 5

2.3.3. 심의·자문 시 유의사항

- 보도포장은 단순을 패턴을 활용하여 평坦하게 마감해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는 패턴 없이 단일 재료로 포장함
 - 원색, 착시를 유발하는 패턴 지양, 회색계열 권장
- 시설물은 최소한의 크기, 간결한 형태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함
- 공공시설물의 장식을 지양하고, 로고나 문자는 간결하게 단색으로 처리함
- 지하차도나 터널 등 인공벽면의 과도한 장식이나 패턴, 외장재 마감은 지양함
- 보차도 경계석의 외측면 모서리는 라운딩 처리하고, 경계석 기준을 준수함
- 보도 경계는 바닥과 질감, 명도가 확연히 구분되도록 마감함
- 공공시설물의 형태는 기능을 우선시하고 과도한 형태는 지양함
- 장애인유도블럭 주변에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등 장애인 편의를 고려함
- 건축물 리모델링 및 증축 시 기존 건축물과 상이한 색채 및 재료 사용을 지양함
- 농산물 등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형상화한 적설적인 디자인은 지양함
- 눈부심을 유발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은 지양하고, 타 시설물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함
- 시공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함

-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높이, 형태, 재질 등 사용성을 우선하여 디자인함
- 색채, 재질, 마감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위주로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함

2.3.4. 단계별 업무 처리방법

- 개최일 기준 일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이나 전담부서의 운영방식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절차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일부 업무(사전검토, 현장답사)는 생략 가능함

[표 27] 진흥위원회 운무 업무 프로세스

절차	처리주체(부서)	업무처리 내용	비고
❶ 사업계획 수립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 계획수립 시 디자인 부서장 협조 요청 	
❷ 심의·자문요청 <위원회 개최 30일 전>	사업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도서 사전협의 후 심의요청 문서접수 * 필요 시 심의도서 보완 요청 	심의요청 자료 등 사전 협의(집행부)
❸ 안건접수 및 개최계획 수립 <위원회 개최 20일 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상정안건 확정 ▪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 섭외 및 장소 확정 ▪ 개최계획 수립(위원장 결재) 	1회 개최 시 3~4건 상정 권장
❹ 사전검토 요청 <위원회 개최 20일 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정성 검토(집행부) ▪ 심의안건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토(심의위원) 	사전검토 의견 취합 후 사업부서 통보
❺ 조치계획 제출 요청 <위원회 개최 15일 전>	디자인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 적정성, 사전검토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요청 	
❻ 현장답사 <위원회 개최 10일 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여건의 위원회 보고를 위한 동영상 촬영 	필요 시 드론 촬영
❼ 조치계획 제출 <위원회 개최 7일 전>	사업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 적정성, 사전검토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심의도서 수정)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으로 구분 * [참고 8] 참조
❽ 심의도서 검토 <위원회 개최 5일 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의견 및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확인 ▪ 심의도서 변경 여부 확인 	
❾ 회의 준비 <위원회 개최 5일 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자료 작성(집행부 검토의견 포함)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검토
❿ 위원회 개최 <위원회 개최 당일>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심의·자문) *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중심 	의결형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준용
⓫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최 5일 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위원장 결재) 	심의의결서, 회의록, 심의의견서, 참석자명부 첨부
⓬ 의결결과 통보 <위원회 개최 5일 후>	디자인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자문결과 통보 	
⓭ 반영결과 회신 <위원회 개최 20일 후>	사업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된 경우 조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재심의의결된 경우 다음 위원회 재심의요청 공문 발송 	조건부가결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
⓮ 최종 통보 <위원회 개최 20일 후>	디자인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반영)결과 확인 후 최종결과 통보 	

2.4. 체크리스트

-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함

[표 28] 진흥위원회 운영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안건접수 및 개최계획 수립	사업부서로부터 심의 또는 자문요청 문서가 접수되었는가? (심의·자문요청도서 포함)	<input type="checkbox"/>
	심의·자문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상정 안건을 확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 섭외 및 장소는 확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전검토 및 현장답사	접수된 안건을 위원회 위원에게 사전검토(온라인)를 요청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접수된 안건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정성은 집행부에서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사전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사업부서로 통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가이드라인 적정성,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보고를 위한 현장답사를 하였는가?(동영상 촬영, 주변여건 검토 등)	<input type="checkbox"/>
회의 준비	가이드라인 적정성,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수정된 심의·자문요청도서를 제출(온라인)받았는가? - 사전검토의견 및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확인, 심의도서 변경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집행부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회의자료는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개최	상정안건 처리를 위한 위원회는 적절하게 개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개최결과 통보	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는가? - 심의의결서, 회의록, 심의의견서, 참석자 명부 첨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상정안건의 의결 결과는 사업부서로 통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조건부가결로 의결된 안건은 조건내용의 조치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재심의로 의결된 안건은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최종 통보	조건부가결 안건의 조건내용 조치결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통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3.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



3.1. 개요

3.1.1. 기본 개념

- 「공공디자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유사한 제도로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 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 업무의 일부를 진행,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총괄건축가 제도가 있음

3.1.2. 자격 요건

-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별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1.3. 공공디자인 전문가 유형

-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총괄 공공디자이너'와 '전문 공공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운영함

[표 29] 공공디자인 전문가 구분

구분	총괄 공공디자이너	전문 공공디자이너
약칭	총괄 디자이너(Master Consultant)	전문 디자이너(Expert Consultant)
역할	관할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전략 수립 및 주요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한 총괄·조정	개별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조사·분석·발주·디자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의 과정에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관리
기간	2년(연임 가능) / 해당 사업 기간	

위촉 주체	국가기관 등	국가기관 등(사업별로 발주처에서 운영)
자격(권장)	대학의 관련 전공 부교수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 12년 이상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등록을 마친 자	대학의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 9년 이상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등록을 마친 자

3.1.4. 추진업무 및 권장 사업

-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 관할 공공디자인 사업의 총괄 및 조정
 - 개별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 기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국가기관 등이 공공디자인을 기획(마스터플랜 수립 등)·디자인·설계하거나 제작·설치·시공·조성 또는 디자인감리 및 개선, 이행 적정성을 검토·보고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참여를 권장함
 -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 공공공간(가로·공원·광장) 조성 관련 사업
 - 문화지구, 문화의 거리, 디자인 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 사업
 - 공공시설물 개선 또는 통합, 가로시설물 통합 관련 사업(관광특구, 관광지구, 농산어촌 정비, 해변·항만·교통 등의 안전 및 편의공간 조성, 체육시설, 도시 및 지역개발, 재정비촉진, 도시재생 등)
 - 도시이미지 통합 구축, 도시 브랜드, 도시 정보안내체계 통합사업
 - 공공시각 및 영상매체,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사업
 - 그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3.2. 총괄 공공디자이너

3.2.1. 업무

-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및 공공공간 조성사업 등에 대한 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함
- 총괄 공공디자이너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각종 기본계획의 검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정책의 발굴·기획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자문, 사업 상호 간 협력적 관계 구축 및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 수립 참여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 마련 및 운영
- 전문 공공디자이너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교육 지원, 공공디자인 관련 정보교류
- 공공디자인 관련 전시 및 행사 추진, 공무원 및 주민 대상 교육 지원

3.2.2. 임기 및 근무방식, 보수기준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근무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최소 주 2일(월 8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 국가기관 등의 여건에 따라 상근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지 및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보수는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따르되, 국가기관 등의 여건에 따라 부기관 장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정무직 공무원의 보수기준 적용)
- 여비는 해당년도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함

3.3. 전문 공공디자이너

3.3.1. 업무

- 전문 공공디자이너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개별 공공디자인 및 공공공간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조사·분석·발주·디자인·설계·제작·설치·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자문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말함
- 전문 공공디자이너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기획단계 참여·자문
 - 개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및 공공공간 조성,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 자문
 - 총괄 공공디자이너 부재시 주요 국가정책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계획 수립·자문
 - 디자인 합의를 위한 총괄 조정자 및 원활한 행정을 위한 소통자 역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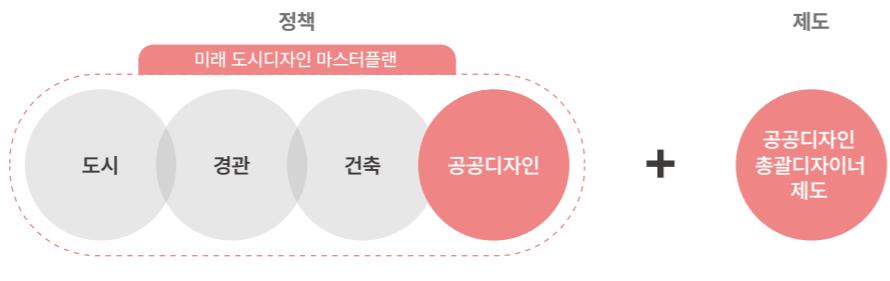
3.3.2. 임기 및 근무방식, 보수기준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여건에 따라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함
- 근무는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국가기관 등의 여건에 따라 상근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지 및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보수는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따름
- 여비는 해당년도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3.4. 운영 사례(남원시)

3.4.1. 도입 배경

- 남원시는 2022년 이전까지 도시,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이 개별적 사업으로 집행·관리되어 왔음
- 2023년 도시 전체 공간과 대상을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을 통합한 '남원시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하반기에 공공디자인 총괄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림 33] 남원시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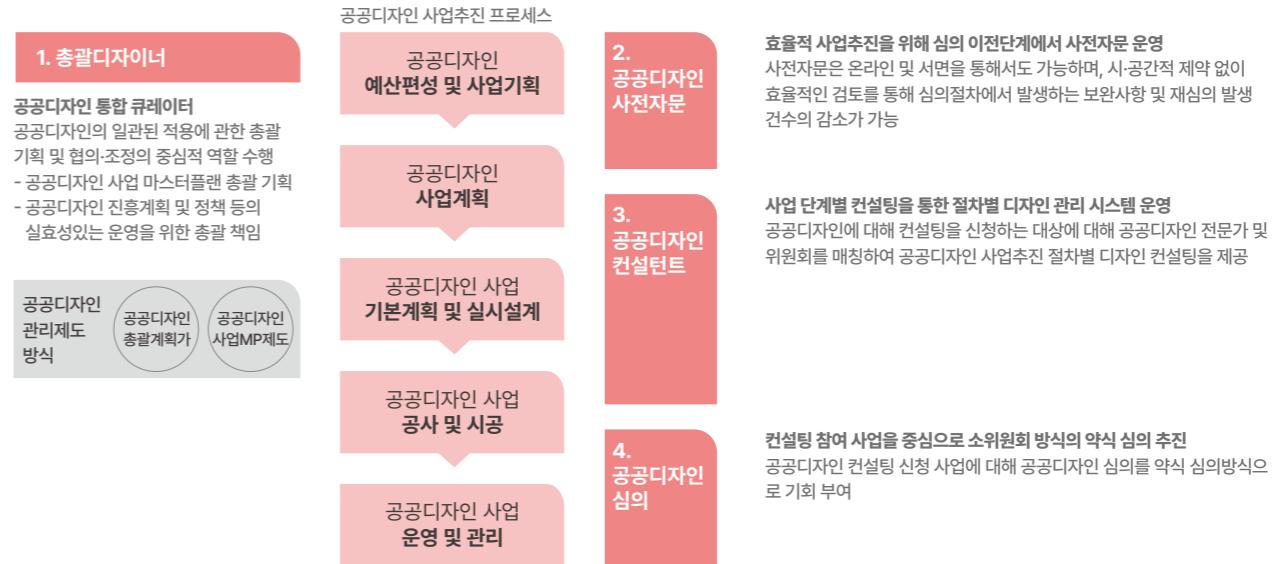
3.4.2. 단계별 운영과정

- STEP 1** 마스터플랜 용역과 연계하여 남원시의 주요 정책 흐름, 시정 방향, 실무부서의 여건 등을 고려한 총괄디자이너 역할 및 제도 운영 목적을 설정함
- STEP 2** 남원시 지역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발굴하여 남원형 공공디자인 정책의 우선순위 및 필요사항을 도출함
- STEP 3** 공공디자인의 고유한 영역성을 고려한 디자인 행정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정책의 관리 장치를 마련함

3.4.3. 공공디자인 지원체계

-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단계별로 집중 컨설팅과 심의 효율화를 통하여 통합적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함
- 총괄디자이너의 역량과 소관 부서의 의지를 융합하여 디자인행정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어 냄

[사업추진 단계별 행정지원 체계]



[그림 34] 사업추진 단계별 행정지원 체계

3.4.4. 주요 성과

- 공공건축, 공공공간, 특화거리, 도시숲, 경관개선 등 종체적으로 도시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디자인정책으로 디자인 품질 제고와 지역 품격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 마스터플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통합적 관리와 총괄디자이너를 통한 조정 및 지원 효과로 신규 및 계속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마련됨
- 전문가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마스터플랜에 기반하여 여러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수행함
- 새로운 정책 도입 단계에 담당부서, 용역사, 유관부서 간의 정책 및 행정 운영 상에서 부딪히는 실무적 고충완화에 기여함
- 총괄디자이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이 총괄디자이너의 관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와 연결함
- 가시적 효과에 따라 기존 마스터플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실, 건설과 등 전 부서와 디자인 행정을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그림 35] 남원시 총괄디자이너 제도 도입 성과

3.5. 운영체계 구축

3.5.1. 위촉 및 운영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할 때, 문체부 고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도시·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해야 함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선정은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공공디자인 전문가 선정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후,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촉함
- 임기직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부기관장급의 지위로 위촉하고, 다양한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전문 공공디자이너를 10인 이상 위촉할 것을 권장함
- 필요 시 전문 공공디자이너 외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공디자인 전문가 선정을 위해 절차, 자격기준, 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여건에 따라 추천 또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국가나 지역 단위 사업 및 행사를 위한 특수목적 공공공간 조성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디자인법」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직 총괄 공공디자이너를 위원장으로, 전문 공공디자이너를 위원으로 위촉·운영할 것을 권장함

- 「공공디자인법」 제1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에는 공공디자인, 건축, 토목, 조경 기술인력이 배치되도록 함
- 전담부서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부서장으로 구성된 "특별TF"를 구성하여 운영 또는 디자인 관련 분야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인 청년 예비 디자이너를 위촉, 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3.5.2. 전담부서의 역할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총괄 공공디자이너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자문 기록 및 관리, 모니터링, 수당지급 등)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 공공디자이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 공공디자이너 참여사업, 사전검토 및 모니터링, DB구축,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
 -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 공공디자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자문요청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 정책수립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관련부서 간 업무협의 및 공유에 관한 사항 등
-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의 경우, 전담부서장은 이행 검토 보고서 및 업무실적 자료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5.3. 제도의 활성화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지위 및 자격기준, 역할과 업무범위, 임기 및 근무방식, 보수지급기준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또는 규칙, 내규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 전문가 업무활동을 위해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체 등에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위촉을 알리고, 업무와 관련된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여야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기관 등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를 통해 주요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공 디자인 전문가의 활동과정을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활동사항 및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성과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공개모집을 포함하여 운영 등에 관계된 각종 서식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

3.5.4. 단계별 업무 처리방법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단계별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30]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 업무 프로세스

절차	처리주체(부서)	업무처리 내용	비고
① 운영계획 수립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전문가 위촉의 필요성 및 역할 검토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위상과 근무방식 및 수당 검토 ▪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방법 검토 ▪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요건 및 모집방법 검토 등 	단체장 결재
② 모집공고	디자인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필요 시 관련 학회, 대학에 협조 공문 발송 	
③ 선정위원회 구성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디자인, 도시, 건축 등) 비공개 모집 ▪ 내부평가자(부단체장 및 관련 실·국장 등) 선정 	
④ 선정절차 이행	선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3배수 이상 선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평가기준은 담당부서에서 선정
⑤ 대상자 확정	선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대상을 단체장에게 추천 ▪ 단체장이 최종 위촉 대상자 확정 	
⑥ 위촉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계획 수립 ▪ 위촉대상 공공디자이너의 위촉식 개최 	단체장 참석

3.6. 체크리스트

- 공공디자인 전문가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함

[표 31]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운영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전문가 위촉의 필요성과 역할, 기관 내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조직 내 위상을 고려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근무방식 및 수당 등 세부 운영사항을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모집 및 선정	공공디자인 전문가 위촉 후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방법은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요건에 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을 위한 방안(공개모집, 추천 등)을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위촉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단체장의 결재를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확정 및 위촉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문서를 게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관련 학회, 대학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전문가 추천을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공공디자인 전문가 위촉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선정위원회를 외부전문가와 내부평가자로 구분하고,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서류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시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여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위촉할 방침을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단체장의 위촉식 일정은 확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단체장이 위촉장을 전수하고, 간담회를 위한 자료는 준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근무 시 업무를 볼 공간은 마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원은 확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총괄 공공디자이너와 협의하여 전문 공공디자이너는 확정하였는가?	총괄 공공디자이너와 협의하여 전문 공공디자이너는 확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위촉된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 부서에 알렸는가?	<input type="checkbox"/>

IV. 공공디자인 행정 실행하기

1.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80
2.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89
3.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103

1.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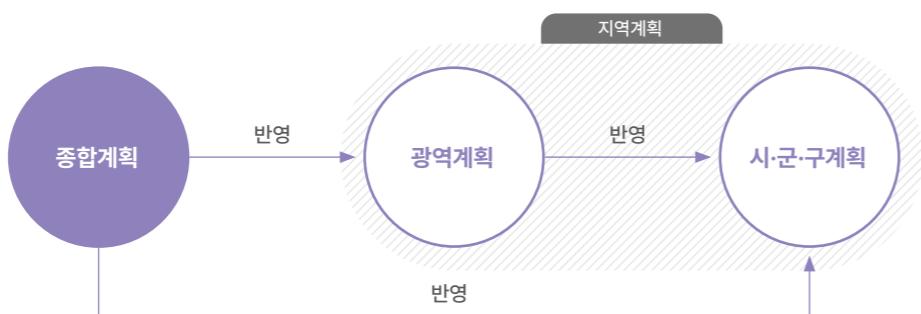
1.1. 개요 및 구성 등

1.1.1. 기본 개념

- 국가 단위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로 구분됨
-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1.1.2. 계획의 연계

- **종합계획 반영**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함
- **광역계획 반영**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계획은 종합계획과 함께 광역계획을 반영함



[그림 36]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연계 개념

[표 32]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기본 방향(문화체육관광부, 2018.5월)

비전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목표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 생활안전 마을 35곳/ 생활편의 도시 67곳/ 품격도시 30곳 구축 -		
추진 전략	[전략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과제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과제 1-2 교통안전 디자인 과제 1-3 재난대비 안전디자인	
	[전략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과제 2-1 누구나 걷기편한 거리·공간 조성 과제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과제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전략 3]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과제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과제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과제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 과제 3-4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전략 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과제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과제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과제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과제 4-4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과제 4-5 공공 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전략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과제 5-1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과제 5-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과제 5-3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과제 5-4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1.1.3. 내용 구성

- **기본원칙 준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성, 범용성, 정체성, 편리성, 기능성 등이 지역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함
- **개발방향** 기본목표,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구축·관리방안, 제도개선, 사업계획, 주민참여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함
- **목차 구성** 개요, 조사 및 분석, 기본방향, 실천전략 등의 구조를 바탕으로 기본방향에서 비전, 목표, 기본전략, 실천방향을 정한 후 실천전략에서 사업추진 방안 및 과제,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제시함

[표 33] 지역계획의 내용적 구성(예시)

구분	세부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계획의 위계 등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분석의 개요 ▪ 기초현황(일반, 교통, 행정, 산업, 인구 및 생활안전 등) ▪ 공공디자인 의식 조사(시민, 공직자 등) ▪ 관련 법규 및 제도·정책 등 ▪ 지역 공공디자인 현황(* 광역계획인 경우 기초 지방자치단체 현황 포함) ▪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분석 ▪ 선행계획 분석(해당하는 경우) ▪ 공공디자인 트랜드 및 SWOT 분석 ▪ 종합분석 결과
기본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및 선행계획의 연계 ▪ 지역 공공디자인 개념 설정 ▪ 지역 공공디자인 기본 전략 수립 ▪ 비전과 목표 설정 ▪ 공공디자인 미래상 설정 ▪ 추진전략 방향 설정
추진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실천전략 수립 ▪ 사업추진 방안 및 과제 발굴(품질관리 및 확산, 제도 개선, 관련분야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방안 포함)
핵심사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추진전략에 따른 핵심사업의 실행방안 제시(사업내용, 추진주체, 예산 등) ▪ 세부 과제 실천방안 ▪ 단계별 추진전략 및 계획
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방안 마련 ▪ 연차별 실행방안, 행정적 제도 개선(조례 개정, 위원회 운영 등)

* 상위 내용을 기본으로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과업내용은 추가

1.1.4. 추진계획 수립 시 행정사항

- 고시 준용 「공공디자인법」 하위규칙인 3건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준용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함
 -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였는지 검토
 -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별도의 보상비 편성이 타당한 사업인지 검토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인지 검토
 - 고시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표 34]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예시(200백만원/ 9개월 기준)

산 출 내 역 서					
구 분	단가(원)	수량	산출금액(원)	구성비(%)	비 고
① 직접 인건비	책임디자이너	6,433,726	1.5인	9,650,589	4.82 '19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기준×2.0
	디자이너	4,933,294	9.0인	44,399,646	22.19
	보조디자이너	3,297,742	4.4인	14,510,065	7.28
	소계			68,560,300	34.29
② 직접 경비	국내여비		1식	920,000	0.46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과업성과품		1식	3,570,000	1.78 최종보고서 100부, CD 3
	전산처리비	120,000	9개월	1,080,000	0.54
	사무용품비	90,000	9개월	810,000	0.41
	자문비	150,000	12인	1,800,000	0.90
	현장운영활동비		1식	900,000	0.45 공청회, 주민협의체 운영
	소계			9,080,000	4.54
③ 제경비			1식	75,416,330	37.71 직접인건비×1.1
	④ 창작료		1식	28,795,326	14.39 (직접인건비+제경비)×0.2
	⑤ 합계(①+②+③+④)			181,851,956	90.92
⑥ 부가가치세				18,185,195	9.08 용역원가 10%
	⑦ 총계(⑤+⑥)			200,000,000	100.00 만원단위 이하 절사

* 직접인건비 월 단가는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기준(문체부 고시 제2018-03호) 준용

- 참가자격 설정 입찰 공고문과 첨부 문서인 제안요청서의 입찰 참가자격에 「공공디자인법」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를 표기함
 - 과업의 특성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4442 또는 4444)를 기본으로 포함
 - 공동수급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조경(업종코드 : 3584) 반영하고, 가급적 디자인 전문회사를 대표사로 지정

TIP	입찰참가자격 예시(기초 지방자치단체 진흥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의 기준을 갖추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기관 ※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비영리법인 확인 증명서류 제출 필수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정량평가 기준 마련**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준용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함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인력 계수 및 등급(특급, 고급, 중급 등) 사용 지양

[표 35] 기술인력 평가기준(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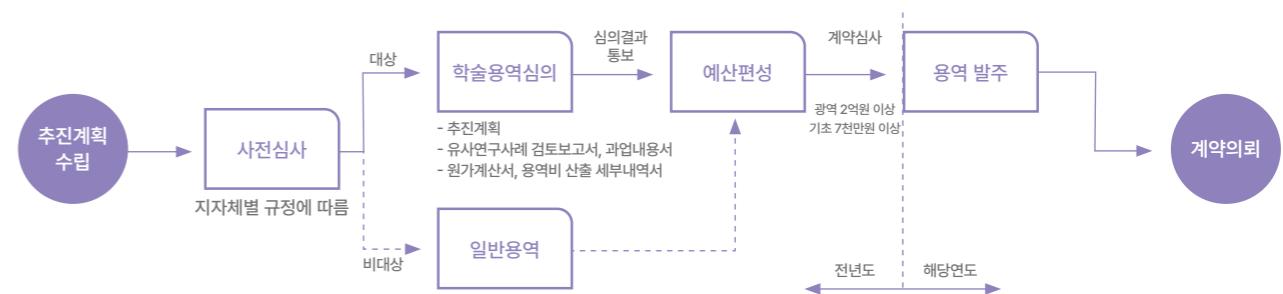
등급	계수	구분	경력기준(실무경력)	학력기준(경력기준은 졸업 및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자격기준(취득 후 실무경력)
가	1.0	총괄	• 20년 이상	-	-
		특급	• 16년~20년 미만	-	-
		고급	• 12년~16년 미만	• 기술사	
나	0.7	중급	• 8년~12년 미만	-	-
		초급	• 4년~8년 미만 (박사: 2년 인정, 석사: 1년 인정)	-	-

등급	계수	구분	경력기준(실무경력)	학력기준(경력기준은 졸업 및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자격기준(취득 후 실무경력)
다	0.4	보조	• 1년~4년 미만	디자인 전공자	•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 • 전문학사 소지자: 2년 이상 • 특성화고 졸업자(디자인전공): 4년 이상
				준전문가자(미술)	• 학사 학위자: 1년 이상 • 전문 학사자: 3년 이상 • 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 5년 이상
				비전문가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년 이상 • 학사 학위자: 2년 이상 • 전문 학사자: 4년 이상 • 일반고 졸업자: 6년 이상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이너 등급 기준 참고] * 경력기준은 졸업 및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1.2. 수립 절차

1.2.1. 용역 수행 이전 수립 절차



[그림 37] 지역계획 수립 절차(계약 이전)

- **추진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필요한 기간, 소요예산, 계약방법, 과업내용 등을 정한 후 용역 추진의 적정성(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중복 여부, 외부용역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전결권자(실·국장)의 방침결재를 득함
※ **불임자료** 과업내용서 및 원가계산서, 타 지방자치단체 수립현황, 관계법령 등 첨부
- **사전심사** 학술용역 추진 필요성 검토 후 심의 절차에 따라 학술용역 사업계획 및 관련 자료(추진계획 결재문서, 유사 연구사례 등)를 첨부하여 관련 부서로 제출함
 - 적정용역은 학술용역심의 안건 상정, 부적정 용역은 직접수행 또는 종결
 -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디자인, 전산개발,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은 학술용역심의 대상에서 제외
- **학술용역심의** 사전심사에서 적정용역으로 통보 받은 후 학술용역 추진계획과 관련 자료(추진계획,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학술용역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함
 - 심의결과 통보 또는 보완사항 수정 제출

- **예산편성** 학술용역심의 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에 다음 해 연구용역비 예산 반영을 요청함
- **용역발주** 추정금액이 광역 기준 2억원 이상, 기초 기준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심사를 통해 최종 용역금액을 확정한 후, 회계 부서에 입찰공고를 요청함
 -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구체적 행정절차는 2.3. 용역의 발주 및 계약 참조
- **계약의뢰**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회계 부서에 계약을 요청함
 - 필요 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첨부

1.2.2. 계약체결 이후 업무절차

- **착수보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통상 10일 이내 보고회를 개최하며, 과업기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 참여인력, 전문가 구성·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 포함
- **수시보고** 과업의 추진상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시보고토록 요청함(통상 월 1회)
 - 수시로 과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과업내용 서에 표기
- **중간보고** 과업기간의 중간 시점(공정 50% 내외)에 실시하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토록 요청함
- **공청회**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주요 내용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함
- **위원회 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 후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보고회 이전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함
 - * 위원회 심의 이전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수렴(온라인) 절차 이행
- **최종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 자료로 추진계획을 결재한 전결권자 및 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 **공고**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주요 내용과 결과물을 관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함

1.2.3. 단계별 업무 처리방법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36] 진흥계획 수립 업무 프로세스

절차	처리주체(부서)	업무처리 내용	비고
① 추진계획 수립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소요예산, 계약방법, 과업내용 등을 결정 ▪ 용역 적정성 검토 후 전결권자 방침 결재 	
② 사전심사	디자인 → 관련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 관련 자료 첨부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학술용역심의, (부적정)직접수행 또는 종결 	학술용역 추진 필요성 사전검토
③ 학술용역심의	관련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심사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경우 관련 자료 첨부 후 안건으로 상정 	
④ 심의결과 통보	관련부서→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과 또는 보완사항 제출 요청 	
⑤ 예산반영 요청	디자인 → 예산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 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해 연구용역비 예산반영 요청 	
⑥ 계약심사 의뢰	디자인 → 계약심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금액이 광역 기준 2억원 이상, 기초 기준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⑦ 용역발주 의뢰	디자인→ 회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용역금액을 확정 후 입찰공고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심사 선행 후 입찰 의뢰 	
⑧ 평가위원회 구성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 및 예비명부 작성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학회 등) 협조 요청
⑨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제출 요청 및 회신	디자인 ↔ 회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명부 제출 요청에 따라 계약부서로 회신 ▪ 제안평가위원 확정(7명~10명 + 예비위원 포함) 후 디자인부서로 회신 	
⑩ 제안서 접수	회계부서,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 관련 서류 접수(회계부서) ▪ 제안서 중 정량적·정성적 자료 접수(디자인부서) 	
⑪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디자인 → 회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 주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정성적 평가), 집행부(정량적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부서장) ▪ 제안서평가 결과 회계부서 통보 	참석수당 지급
⑫ 협상대상자 통보	회계부서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점수 합산 후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⑬ 용역의 협상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협상(우선협상대상자) 	
⑭ 협상결과 통보	디자인 → 회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결과 통보 	감독관 경유 후 착수계 제출
⑮ 계약 및 기간 통보	회계부서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및 감독공무원 지정, 계약기간 통보 	
⑯ 착수보고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과업 수행계획서 포함 	결과보고
⑰ 수시보고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월 1회 이상 협의 	
⑱ 중간보고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내용 검토 	결과보고
⑲ 공청회			
⑳ 위원회 심의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이전 공청회, 주민 및 관련자 의견 수렴 	결과보고

절차	처리주체(부서)	업무처리 내용	비고
❷ 최종 및 결과보고, 공고	디자인	▪ 전결권자, 위원회 위원 참석한 보고회 개최 ▪ 용역 준공 이전 최종 결과보고 결재 ▪ 용역 준공 후 관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결과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처리주체(부서)는 달라질 수 있음

1.3. 체크리스트(지역계획 수립 용역 이전 업무)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함

[표 37] 진흥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하였는가? (유사 연구사례 등 선행연구자료 검토)	<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 수립 이전 용역기간, 소요예산, 계약방법, 과업내용, 원가계산, 관계 법령 등은 검토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용역 추진의 적정성(용역의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종복 여부, 외부용역의 타당성 등)은 검토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을 전결권자(실.국장)에게 결재받았는가? -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타 지방자치단체 수립현황, 관계법령 등 첨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지방자치단체 규정이 있는 경우) 학술용역 추진 매뉴얼을 숙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학술용역 추진계획서는 관련 부서로 작성·제출하였는가? - 추진계획 결재문서, 유사 연구사례 등 첨부	<input type="checkbox"/>
	학술용역 사전심사의 결과는 통보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결과 학술용역심의 제외대상인 경우 일반용역으로 추진토록 통보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학술용역심의	사전심사 결과 적정 또는 수정 요청되어 학술용역 추진계획을 수립 후 안건상정을 요청하였는가? - 추진계획 결재문서,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첨부	<input type="checkbox"/>
	학술용역심의 결과는 통보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산 편성	학술용역심의 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에 다음 해 예산반영을 요청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용역발주 등	예산 확정 후 계약심사(1억원 이상)를 통해 최종 용역금액을 정하여 회계부서에 입찰공고를 요청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가? * 가격입찰인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여 협상과정을 거쳤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약의뢰	절차를 거쳐 정해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위해 회계부서에 계약체결 요청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2.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2.1. 사업 시행의 원칙

2.1.1. 기본 개념

-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세후과제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수립, 전문가의 참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도 필요함
- 「공공디자인법」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등에서 정한 사업 시행의 원칙과 기준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절차, 발주 및 계약방법 등을 정의함

2.1.2.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

-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
-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함
-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함
-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
-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함
- 상기 사업 시행의 원칙을 통해 '공공성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적 관점에서 계획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라는 사업방향 설정이 가능함

2.2. 사업 추진 절차

2.2.1.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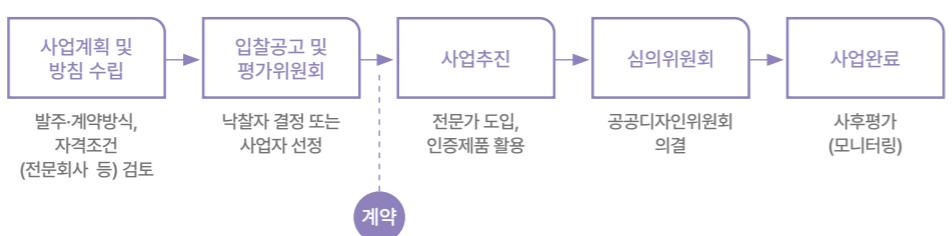
- 공공디자인 사업은 크게 용역과 공사의 두 가지로 대별되며, 일부 물품제조·구매로 사업이 추진되기도 함
- **용역** 용역은 크게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서 규정한 용역을 말하며, 학술용역을 포함하여 기술용역이 아닌 모든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됨

[표 38] 용역의 종류

구분	종류
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주택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 정보통신용역, 시설관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운송용역, 기타 일반용역

-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말함
- **물품제조·구매**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토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입찰을 원칙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적격심사,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 2단계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 * 계약의 체결방식 등 세부사항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검색 후 참조

2.2.2. 사업의 흐름도



[그림 38] 사업추진 흐름 개요

- **사업계획 및 방침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재권자로부터 목적, 기간, 예산 및 발주·계약방식, 사업의 내용 등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임
 -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하는 경우 데이터 분석자료, 협업체계 구축방안 등 포함

TIP

-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공공디자인 전문가, 관련 기관의 인력풀을 확보하고,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지 검토

- **입찰공고 및 평가위원회**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 후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거쳐 낙찰자 또는 사업자를 결정하며, 계약을 통해 최종 확정함
- **사업추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사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요구사항을 사업에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유도함

- 용역은 착수 및 중간보고 등의 과정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결과물의 질 담보
- 공사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까지 전문가 검토, 자문,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토록 유도

TIP

- **사전조사** 관계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조사원의 사전교육을 통해 분류기준, 시점 등을 정하여 자료 정리
- **주민참여 등**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자발적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급적 계획 수립 시 주민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심의위원회** 중간보고 이후 최종결과보고 이전 용역과 실시설계 이전 공사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함
- **사업 완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하고, 공사는 사후평가(모니터링) 단계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여 추후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2.3.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

2.3.1. 용역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착수 이전에 디자인 개발 등의 용역을 선행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에 따라 용역을 추진함
- 용역의 입찰(발주) 및 계약방법은 다양하나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경쟁 입찰방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용역이 추진됨
- 관계 법령 및 규정(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8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 공동계약 실무가이드(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

2.3.2. 발주(입찰) 방식

-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과 공사의 입찰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제외함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 가능(제한경쟁입찰)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가능
- 공사(공공건설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할 것인가에 따라 조달 방식이 결정됨
 - **설계·시공 분리방식** 발주자가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 제공하고 최저가 또는 적격 심사와 가격경쟁 등을 통해 낙찰자 선정
 - **설계·시공 일괄방식** 발주자의 사업기본계획을 토대로 계약자가 설계와 시공 모두 수행하는 방식
- 일반적으로 공사의 경우 설계·시공 분리방식을 택하지만 예술성, 창의성, 상징성 등의 사유로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작품 등 개인의 창작성이 강조되는 경우 기술제안입찰을 검토하되, 그 외 디자인과 관련한 경우는 일괄입찰이 적정

2.3.3. 계약 방식

-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짐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 ※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공동계약(공동수급) : 사업추진 시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를 2명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의 방식을 결정
- ※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413호) 참조

[표 39] 입찰 및 낙찰방식

사업 명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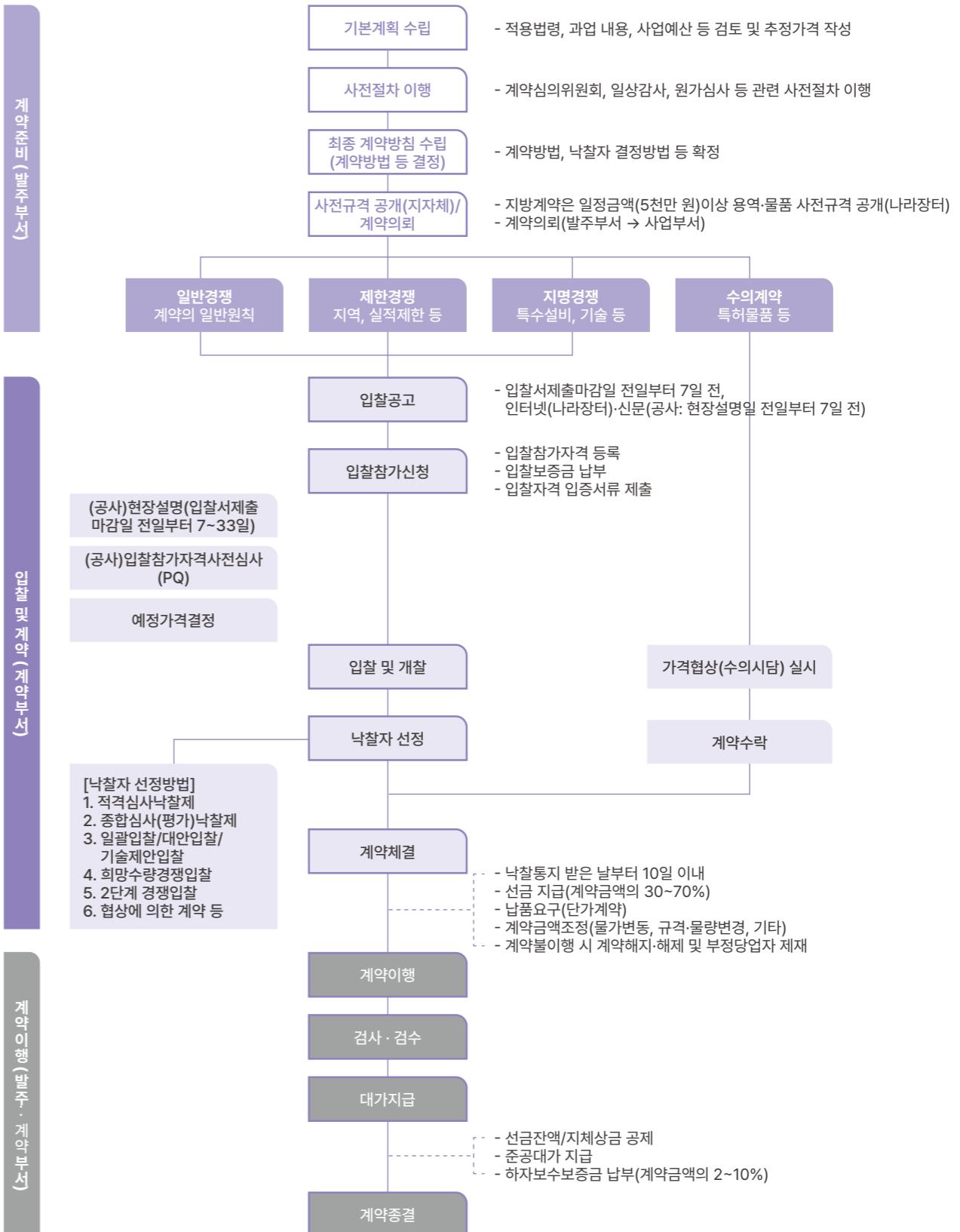
- 공동이행의 경우 주계약자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되, 가급적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하는 것이 품질을 담보하는 데 유리
- 시간을 확보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표 40] 수의계약 유형

구분	유형	주요 내용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부가세 미포함)	추정가격 2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추정가격 1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재공고 입찰 등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부가세 미포함)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제25조제1항4호의 가, 나, 다, 마)				
천재지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거, 6호~8호)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 그 밖에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표 41] 입찰(발주) 및 계약방법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계약방법
경쟁계약	일반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제한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금액 미만의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	수의계약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축량·훈련·시설관리 5천만원 미만인 용역 <p><참가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소액)수의 계약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p><참가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그림 39] 계약업무 흐름도

2.3.4.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의 물품, 용역계약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이 대상임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함(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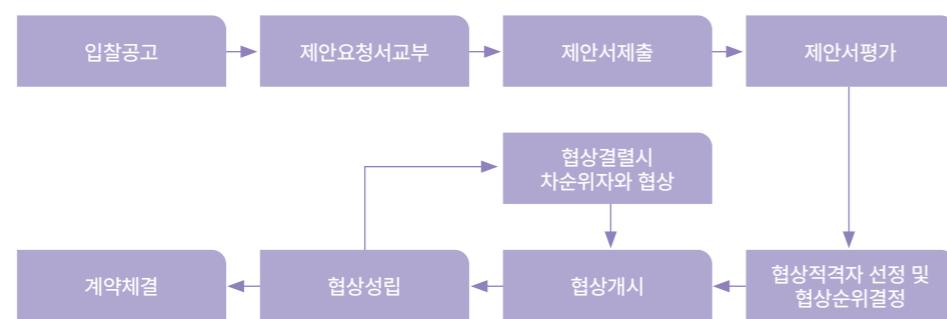
[표 42]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별표 3>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 사업명		
② 담당자	소속 : ○○시(군) ○○과(팀) 직위(직급) : ○○○○ 성명 : ○○○(☎ 000-000-0000)	
③ 사업기간	④ 사업비(억원)	
⑤ 주요사업내용		
⑥ 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⑦ 계약부서 검토 의견		
⑧ 일상감사부서 검토 의견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일
○○○ 장

- 업무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4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업무 흐름 개요

-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10일전까지 공고 가능
 -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 **제안요청서 교부** 입찰에 참가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 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며,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1)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표 33] 참조
 - 2)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사업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경우 [표 34] 적용 가능
 - 3)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되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표 33], [표 34]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TIP	평가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정량적·정성적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산 산술평균으로 평가

[표 43]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정성적 평가분야	용역 · 물품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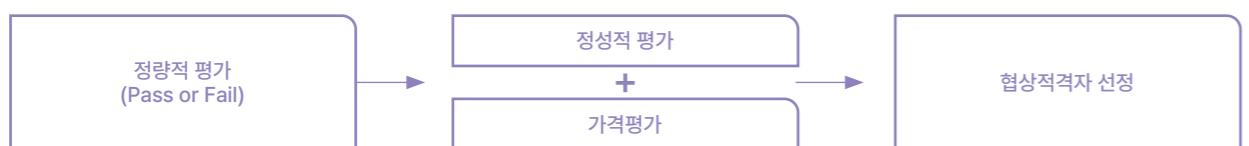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표 44] 제안서 평가절차와 항목

평가절차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경험(실적)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용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TIP 용어의 정의

- 제안요청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 제안서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
- 협상적격자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협상대상자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
- 평가분야 [표 33]과 [표 34]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입찰가격
-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따위의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산정된 가격으로 예정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 개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 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2.3.5.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함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 1~2명을 추가 지정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비공개 하더라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표 45]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 부문 *	입찰참가업체명				비고
	A	B	C	
○ ○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3.6. 단계별 업무 처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의 단계별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46]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프로세스

절차	처리주체(부서)	업무처리 내용	비고
① 학술용역 심의	디자인 →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용역의 성격이 대상인 경우 학술용역 심의 요청 * 기술용역 및 디자인 등은 일반용역으로 추진하고, 사업추진 이전연도에 절차 이행 	학술용역 심의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규정 준용
② 심의결과 회신	담당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결과 통보 	
③ 추진계획 수립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추진을 위한 계획(방침) 수립 -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첨부 	
④ 대상사업 검토 요청	디자인 →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별표3 참조) 제출 	
⑤ 계약심사 의뢰	디자인 →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용역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추정금액이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절차 이행 - 입찰·계약 이전 심사 요청 	(공사, 용역) 심사요청서 및 첨부서류
⑥ 발주의뢰	디자인 →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를 위한 발주의뢰 - 학술용역 추진계획 및 결과, 용역 추진계획,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첨부 	발주의뢰 후 회계부서에서 입찰 공고
⑦ 평가위원회 구성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계획(방침) 수립 -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 및 예비명부(21명) 작성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협조요청 공문 발송
⑧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제출 요청 및 회신	디자인 ↔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명부 제출 요청에 따라 계약부서로 회신 - 제안평가위원 확정(7명~10명 + 예비위원 포함) 후 디자인부서로 회신 	
⑨ 제안서 접수	회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참가 관련 서류 접수(회계부서) - 제안서 중 정량적·정성적 자료 접수(디자인부서) 	
⑩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디자인 →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 주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운영 - 평가위원회(정성적 평가), 집행부(정량적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부서장) - 제안서평가 결과 회계부서 통보 	제안서 보상대상자 선정 검토 및 의결
⑪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회계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점수 합산 후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제안서 보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해당하는 경우)
⑫ 용역의 협상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협상(우선협상대상자) 	
⑬ 협상결과 통보	디자인 →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결과 통보 	
⑭ 계약 및 계약기간 통보	회계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 및 감독공무원 지정, 계약기간 통보 	

2.4. 체크리스트

-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함

[표 47]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사업계획 수립 <전년도>	사업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고, 사업의 내용, 비용 추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침을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수립 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산 편성 <전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 이행 <전년도>	학술용역 심의, 가격 심사 등 사업 추진 이전에 필요한 단계는 거쳤는가?	<input type="checkbox"/>
	심의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 수립	확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의 범위 등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입찰 준비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회계부서와 협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입찰공고를 의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제안서 평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제안서평가 위원을 모집하고, 예비 명단을 포함한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제안서평기를 위한 회의실과 장비 등을 점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량평가는 시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가격 접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협상 및 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업체에게 통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발표 이후 조정이 필요한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해 협상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보고회 개최 등	계약 이후 15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과업 추진 중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과업 추진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과업이 심의대상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준공 및 결과보고	과업 완료 후 과업이행요청서에 반영된 최종 성과품 목록에 따라 점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준공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준공처리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포함하여 결과보고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3.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광역 지방자치단체

3.1. 개념 및 기준

3.1.1.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정의

-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함.(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신고 기준을 말함(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

3.1.2.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

-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2. 신고 및 변경

3.2.1. 신고 서류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 1부(* 법인만 해당)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인력으로 등록하는 인원만 제출 [전문인력에 대표자 포함 가능(단, 자격 증빙자료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 *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재직증명서상의 전문분야 실무경력 미달 시에 한해 제출
 -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예 : 국민연금공단 발급)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직전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관할지역세무서)발급]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만 해당)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The figure shows two side-by-side application forms for public design firms. The left form is titled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변경신고서' and the right form is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Both forms contain detailed sections for company information, contact details, and specific fields related to reporting or change notif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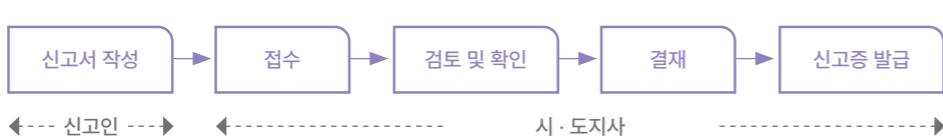
[그림 41]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3.2.2. 신고 절차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함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 신고

- 신고증 발급 흐름도



[그림 42]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절차

3.2.3. 변경 절차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1.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명칭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함

- 단,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회사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접수된 경우는 기존 신고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그 외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신규 신고번호로 신고증을 발급함(신고대장 관리 포함)

3.2.4. 업무 처리기한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정한 기간(14일)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됨

TIP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수리 시 담당자 점검사항

- 매출 기준 총족여부는 증명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로 확인할 수 있으나, 공공디자인 분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적 여부는 확인이 불가
 - (예시) 옥외광고물 관련 업체가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는 경우 실적 확인 불가
- 전문인력 기준(3명 이상) 총족으로 전문회사 신고수리 후 인력변동이 생겨 자격요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미흡
- 매출 또는 전문인력 기준이 신고수리 된 이후 변경되어 자격요건 상실 예정인 전문회사를 관리하기 위해 전문회사 인정기간(2년 또는 3년)을 두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거나 수리기관에서 관리 토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3.2.5.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현황

-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 수리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8]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현황(2024년 11월 말 기준)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전북	제주		
개	200	32	28	20	16	16	13	9	101	16	9	27	11	19	13	11	12	553		
비중(%)	36.2	5.8	5.1	3.6	2.9	2.9	2.4	1.6	18.2	2.9	1.6	4.9	2.0	3.4	2.4	2.0	2.2	100		

3.3. 신고 수리 시 주요 업무

3.3.1. 행정 절차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해야 함

*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그림 43]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및 신고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3.3.2. 단계별 업무 처리방법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를 위한 단계별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49] 전문회사 신고 업무 프로세스

절차	업무처리 내용	비고
① 신고서 접수	접수서류 확인 - (필수) 신고서, 법인인 경우 정관, 상근고용증명, 매출증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검토 필요 ※ 자료 미비 시 보완 후 재접수 요청	매출실적 검토 필요 (예 : 옥외광고 실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
② 민원실 접수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접수 후 채번	처리기한 : 14일 ※ 자체 기한 : 법적 기준의 30% 이내
③ 비전자문서 등록	민원접수 번호 부여된 신고서 및 접수서류를 스캔 후 비전자문서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	신고서, 정관, 고용증명, 매출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순으로 접수
④ 중복신고 조회	전문회사 중복신고 여부 조회(수신자 : 전국 시·도)	
⑤ 검토 보고	전문회사 신고 신청 검토보고서 작성(전결 규정에 따라 부서장 결재)	
⑥ 신고증 발급	전문회사 신고증에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신고증 발급	

절차	업무처리 내용	비고
⑦ 신고 수리 알림	신청업체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서 통보 후 원본 우편발송	
⑧ 신고대장 기록보관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해당 내용 기록	
⑨ 민원전산 처리	민원접수내역 등의 해당내용을 확인 후 종결 처리(자체 시스템)	
⑩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https://publicdesign.kr)에 전문회사 신고현황 수시 등록	광역 담당자별 id/pw 개별 발급

3.4. 체크리스트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함

[표 50]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신고서 접수	전문회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신고에 필요한 관련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점검하였는가? - (필수) 상근고용증명 및 전문인력증빙서류, 매출증명, 법인일 경우 정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검토 필요	<input type="checkbox"/>
	접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후 재접수하도록 요청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접수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집행부 검토 등	민원접수 번호가 부여된 신고서와 접수서류를 스캔 후 비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집행부 검토 이전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중복신고 여부를 조회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신고수리 알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전문회사 신고가 적정한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전문회사 신고증에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신청업체에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결과를 통보한 후 원본은 우편으로 발송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관리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접수내역 등의 해당내용을 확인한 후 민원전산 시스템에 종결처리 하였는가?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해당)	<input type="checkbox"/>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 전문회사 신고현황을 등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V.

공공디자인 행정

공유하기

1. 공청회 개최

110

2. 추진협의체 운영

115

1. 공청회 개최



1.1. 용어 정의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함(「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

1.2. 개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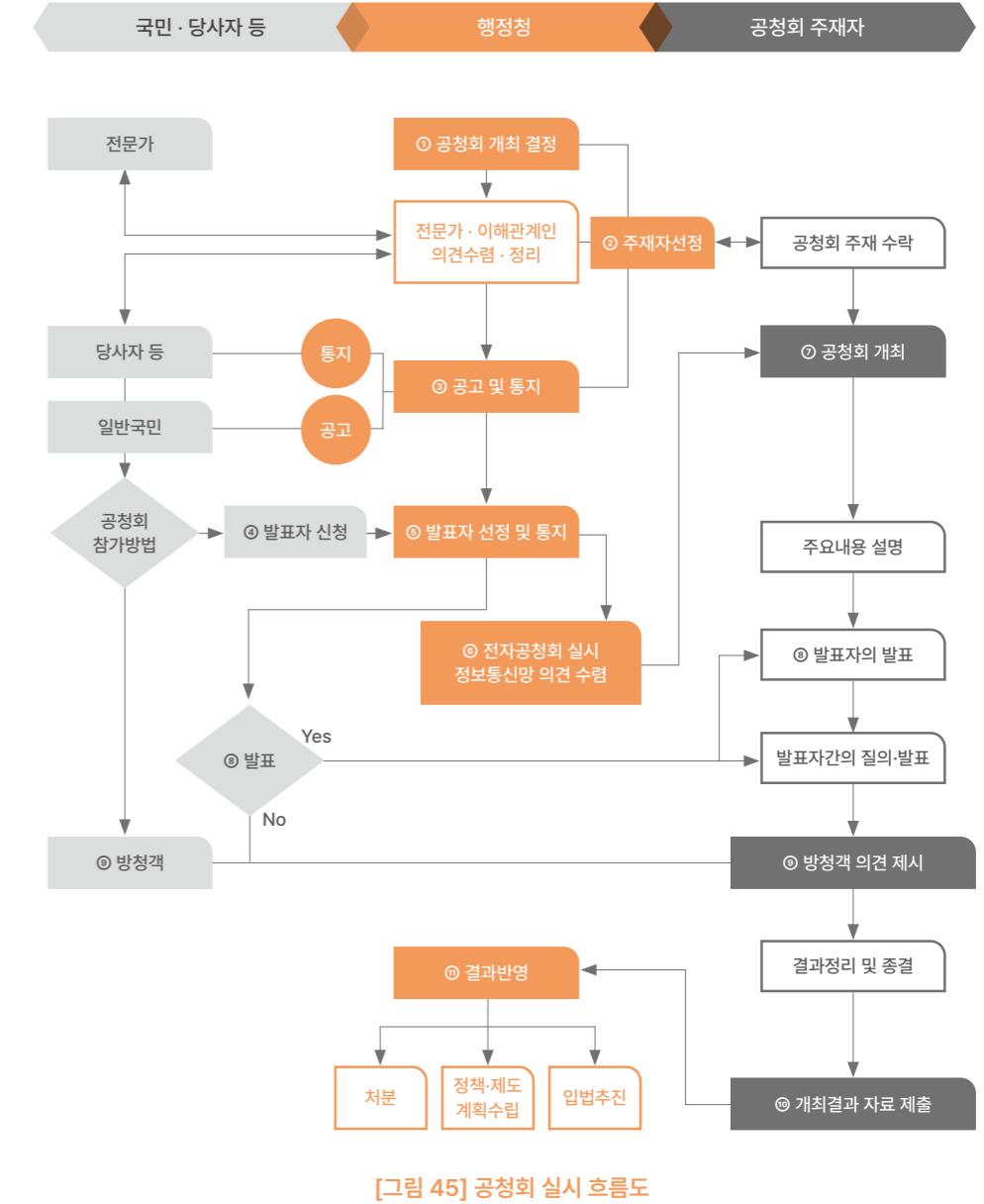
-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사업내용에 반영함(「공공디자인법」 제14조)

1.3. 개최 절차

- 「행정절차법」 제2장 제3절에 따라 진행할 것을 권장하며, 주요 절차 및 실시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44] 공청회 주요 절차



- 개최 결정** 「공공디자인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름
- 주재자 선정**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함

TIP 공청회 주재자(좌장)의 역할

- 공청회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의 전 과정 주재
- 공청회 개최 후 주요내용·진행순서 등 설명
-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내용 제한 가능
- 공청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주의 또는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의 조치 가능
- 공청회 종료 후 제시된 의견 등 결과 정리 및 행정청 제출

- **개최 통지 및 공고**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함
- **발표 신청** 발표를 원하는 사람은 공청회 사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 등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행정청에 공청회 발표 참가를 신청함
- **발표자 선정 및 통지**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되,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 가능함
 -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등
 -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온라인공청회 개최** 공청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음
- **개최 및 진행** 주요 내용·진행 순서 설명,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함



[그림 46] 공청회 진행 절차

- 공청회 시간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발표자별 발표시간, 순서 등을 미리 정하여 진행
-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
-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하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 제한 가능
- **결과 제출**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가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 등 결과를 정리하여 행정청에 제출함
- **결과 반영** 행정청은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 입법안, 행정예고안 등에 반영함
- **결과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함
- **사후 조치**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1.4. 공공디자인 사업 공청회

1.4.1. 개요

- 「공공디자인법」 제14조에서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1.4.2 공공디자인 사업의 범위

- 「공공디자인법」 제2조 제2호에서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은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민설명회와 같은 방식으로 공청회를 대신할 수 있음

1.4.3. 단계별 업무 처리방법

- 공공디자인 관련 공청회 개최의 단계별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51] 단계별 업무 처리방법

절차	업무처리 내용	비고
① 공청회 개최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목적, 진행 절차, 발표자 명단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 장소 선정 - 발표자(토론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 목적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가 4~5명으로 구성 - 주민의견 수렴계획, 공고 및 홍보계획, 부서 협조사항 등 포함 	발표자 선외 시 주재자(작장) 선정
② 공청회 공고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한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최목적, 일시 및 장소, 공청회 대상 사업의 개요, 의견 제출 방법 설명 - 공청회 공고 시 첨부된 공고문에 온라인 의견 수렴 방법(팩스, 이메일 등) 표기 	최소 2 ~ 3주전 공고
③ 발표자 선정	공청회 개최계획에 따라 선정된 발표자를 확정하고, 개별 통지 일시 및 장소, 참석 여부 최종 확인 공청회 자료 송부	
④ 온라인 의견 수렴	공고 시 게시된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의견 정리	공청회 개최 1주일 전
⑤ 공청회 개최 사전 점검	참석자 확인(의원 및 기관장 등) 공청회 개최 장소 상태(작석 배치, 마이크, 영상 및 음향설비 등) 점검 현수막, 팜플렛, 발표자료 등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절차	업무처리 내용	비고
⑥ 공청회 개최	개회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내빈 인사말씀 → 공청회 자료 발표 → 토론자 소개 → 전문가 토론 →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폐회 순으로 진행	
⑦ 공청회 경과 반영	온라인을 통한 사전 의견 수렴, 현장 의견,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 반영	용역사 송부
⑧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공청회 결과와 언론 홍보자료 등을 포함하여 결과보고 결재	

1.5. 체크리스트

- 공청회를 개최하기 이전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에 점검함

[표 52] 공청회 개최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공청회 개최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한 단계인가?	<input type="checkbox"/>
	공청회의 주재자를 섭외·선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등을 확정하고, 개최계획의 방침을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공고 및 통지	개최 14일 이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일반 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보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발표자 선정 등	발표자를 먼저 모집하고, 없는 경우 공청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을 확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발표자의 발표 원고를 요청하고, 인쇄물 제작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수렴 및 온라인공청회 준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청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점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전 준비	공청회 행사에 필요한 물품(현수막, 인쇄물 등)을 준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청회에 참석할 내빈(기관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공청회가 개최될 장소의 영상 및 음향 장비 등은 점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토론을 위한 집기의 재배치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각 단계별로 처리해야 할 임무를 숙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주재자와 진행 순서를 상호 점검하고, 주재자의 역할을 설명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2. 추진협의체 운영

2.1. 용어의 정의

-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조직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거나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를 말함

2.2. 구성 및 역할

-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을 3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의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활용

2.3. 구성효과

- 지역주민의 활용 및 만족도가 높아지며, 고용창출 효과 및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시행 후 주민의 자생적 능력으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효과 등 혜력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

2.4. 구축방법

- 주민의 자율적 기획이라는 원칙하에 철저히 지역주도·주민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제도 개선 및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교육 선행 필요



[그림 47] 주민협의체 구성의 단계별 발전과정

2.5. 자문 및 수당

- 「공공디자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추진협의체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VI. 공공디자인 행정 활용하기



1. 공공디자인 전담기관



1.1. 전담기관 개요

1.1.1. 기본 개념

- 「공공디자인법」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1.1.2. 추진 업무

- 전담기관은 다음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추진함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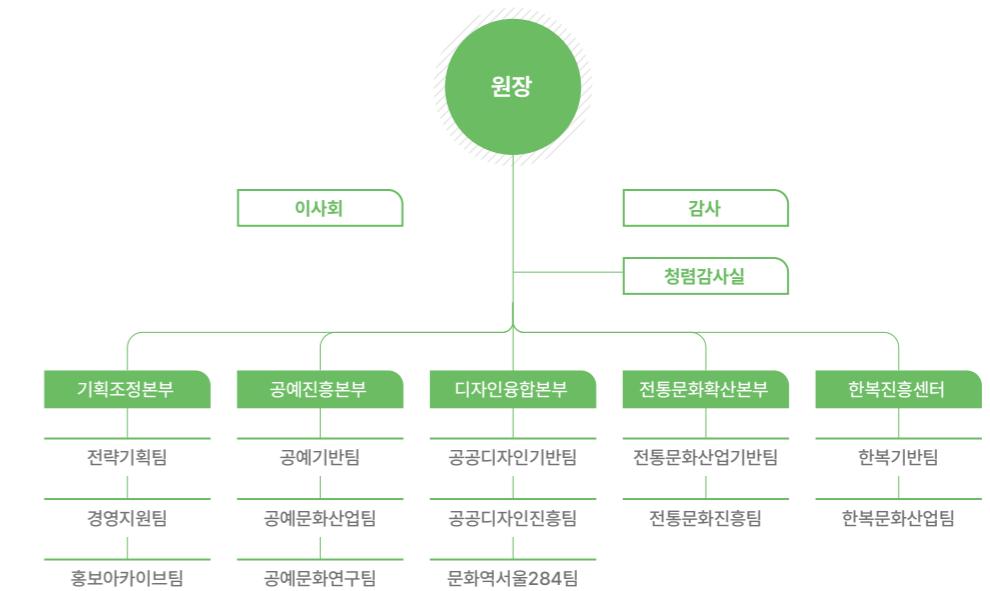
1.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1.1. 개요

- 창의적인 공예·디자인·전통생활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0년 4월 통합 설립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2019년 4월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정

1.1.2. 조직 및 업무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5개 본부 및 센터를 두고 있으며, 이 중 디자인융합본부의 3개 팀이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추진함
- 디자인융합본부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가치 확산, 컨설팅, 혁신지원 및 문화역서울284를 운영함. 세부적으로는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개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실시, 전문인력 인증발급, 전문회사 신고 안내,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토론회 및 교육 시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소식지 제작 등의 업무를 함.



[그림 4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2. 우수 공공디자인



2.1.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2.1.1. 개요

- 시행목적**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역할과 인식을 넓히고, 모범이 되는 공공디자인 사례를 확산시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함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선정부문** 2025년 공모는 사업부문, 연구부문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며, 공공디자인 및 지자체 운영현황에 따라 매년 공모 부문 및 분야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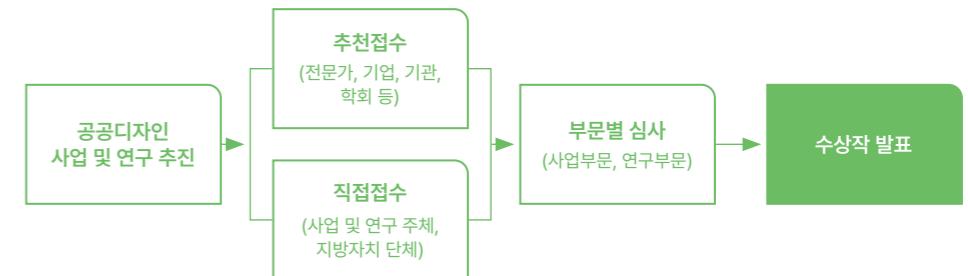
[표 53]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부문 및 분야

구분		주요내용
부문	분야	
사업부문	공공공간 및 건축	국민의 안전, 편의, 문화, 생활을 개선하는 공간, 도시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및 경관 조성 등
	공공시설물	교통 및 보행, 편의, 안내 등 국민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도시 기반 및 기타 시설물
	공공시각이미지 및 공공용품	정보 전달 및 상징 및 브랜드를 위한 시각이미지, 환경적·상징적·심미적 역할의 조형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용품 등
	공공서비스 / 캠페인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 및 타 부서와의 협업 등 행정 우수사례, 공공·민간기업 등의 국민 안전, 편의, 문화, 생활을 개선한 공공디자인 캠페인, 네트지, 행동 유도 디자인 등 서비스 운영 사례
연구부문	연구 논문	공공디자인 전문성·발전 가능성, 혁신성 등 R&D 강화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기여하는 연구 논문 * 국내외 등재 논문에 한함

- 참가자격** 공공디자인 사업 및 연구를 추진한 개인(팀) 혹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기업(공공/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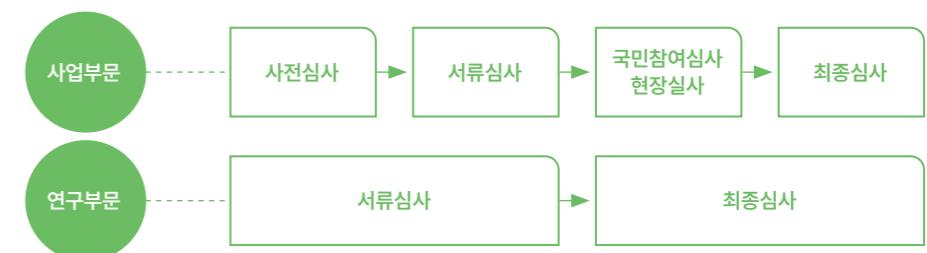
- *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디자인·미술(공간, 그래픽, 색채, 제품, 환경 등), 도시계획, 건축설계, 조경설계
- * **공공디자인 유관 학술 연구 분야**
디자인(시각정보, 환경, 산업), 미술(순수, 응용미술), 건축공학(건축계획, 설계, 건축문화재), 환경공학(환경계획/설계), 인지과학(사회인지), 심리과학(감각, 인지심리, 지역사회심리, 범죄심리) 등

- 공모 절차**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을 통한 접수(추천/직접) 후 심사를 거침



[그림 49]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공모절차

- 심사 절차**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심사 절차 및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함



[그림 50]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부문별 심사 절차

[표 54]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우수사례 부문 수상작**

구분	상명	프로젝트명	이미지
사업 분야	대상 (대통령상)	공원의 미래를 엿보다, 오목공원 리노베이션 - 서울 양천구, (주)디자인스튜디오 엘오씨아이(LOCI), 모스건축사사무소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어르신 인지건강을 위한 다감각 인생정원 만들기 - 경기 광명시, 스튜디오 엠엑스디	
	우수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상)	보기 쉽고 찾기 쉬운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개발 - 서울특별시, (주)샘파트너스	
		적응형 의류 리폼 서비스 디자인 -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에프알엘코리아	
		동구 통합형(3-S)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 대구 동구	
		수원시 혁신민원실 조성 - 수원특례시	
		노안남초 비바놀이터 프로젝트 - 건축사사무소 유어예	

입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상)	서울아트책보고(제2책보고) 고척돔 지하공간 리모델링 - 서울도서관, 남정민, OA-Lab건축사사무소, 메이트아키텍트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기획·운영 - 강원 양양군, (주)서울소셜스탠다드, 착착 건축사무소	
	개포3동 노령세대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사업 - 서울 강남구, (주)디자인다, (주)에스아이디자인그룹	
연구 분야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적합대상 없음)
	특별상 (빅터마골린상)	공공보건 커뮤니케이션 디아이어그램의 정보 프레임워크 제안: 코로나19 백신 원리 디아이어그램의 개선 사례 - 한영애, 황인혜, 오병관(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우수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상)	동물행동학 관점에서 본 반려견 테마파크의 동물 친화형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 김세훈(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 연구센터)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용인특례시
	입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상)	전북특별자치도

-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

상명	프로젝트명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쓰레기 통합 안내 웹 서비스, 머지 - h&m(배미애, 김현지)
최우수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엘리베이터 자동신장충격기 시스템 - 좋은엘리베이터(주)(제권진, 김려원)
	모두를 위한 서울숲 조명 대여 시스템 호통이 - 형설(김찬영, 김도연, 원준희, 조효진, 주지현)
우수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빗물을 재활용한 강아지 소변 청소 가로등 - 최세령
	조립식 가변형 쓰레기통 디자인 - 이지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공연 예매 도움 앱, 보러가 - 전빵(홍지영, 권은진)
	미아방지 유도선과 간이 쉼터 - 채원빈
장려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안전한 주택, 안주 - 권다영
	한강 배달존 안전 가이드 제안 - 남예진
	마음 배움 버스 - 송준호
	노인 길찾기 앱 UI :동행 - 조희림
	스마트폰을 더 쉽게! 디지털 손선생 - 이창호
입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지하 매립형 자동 소화전 A.U.H(Automatic Underground Hydrant) - 이재용
	낙원동 및 돈의동 일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계획 - 조성민
	도심 속 자연 사운드 오아시스 - 전영자
	비상탈출 표적지, 모서리를 깨세요! - 안재민
	선 / LINE - 장인수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실내 점자블록 안전 매트 - 강해원

상명	프로젝트명
입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공공정보 전달을 위한 수어 활용 일러스트레이션 - 진향기
	전기차 화재와 홍수에 대응하는 차세대 물막이판 디자인(BELLOWS) - 벨로우즈(황은정, 권민주, 문수혁, 민경훈, 황성진)
	마로니에 공원 UNIVERSAL ART COMPLEX - MoD 공간팀(최규서, 김재권)
	성수동, 지상선로의 새로운 사용 - 박진우
	자율 주행 버스 내부 안내 디스플레이 UI 디자인 - DAB(김현서, 최유빈)

2.2.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

● 시행목적 지역 단위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지방

자치단체가 인증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함

TIP

- 우수공공시설물 인증제는 현재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남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별도 시행 없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인증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디자인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효율적

[표 55]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명칭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우수공공디자인 선정제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제도시행근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공공시설물의 우수디자인 인증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인증대상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신청자격	해당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 업체(생산과 유통 A/S 능력을 갖춘 자)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 내 시·군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 개인
선정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현물심사 → 최종 선정 단, 서울시는 현물심사 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충남은 현물심사 없이 패널심사 후 선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전시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최초시행	2008년	2019년	2017년	2009년	2010년
인증기간	최초 2년	최초 3년	최초 2년	최초 3년	최초 3년
재인증	2년 단위	기간 미정	2년 단위	2년 단위	3년
시행주기	년 2회	년 1회	년 1회	년 1회	년 1회
인증마크					
연계사업	디자인클리닉 (단기, 장기)	디자인클리닉 시행예정	없음	디자인클리닉	없음

● **대상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증 대상시설물을 조례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3호의 분류에 따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로 분류하고, 그 밖에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56]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대상 시설물

구분	분류	인증대상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그늘막)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녹지시설물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보호시설물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관리시설물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 CCTV
		조명시설물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자전거보관대(벽부형), 볼라드, 맨홀, 현수막 게시대(저단형), 가로등, 통합지주(기본형, CCTV결합형), 보안등, 방음벽, 중앙분리대, 벤치, 보행자 펜스, 자전거도로 펜스, 교량용 펜스, 보도블럭,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그늘쉼터(그늘막), 무인키오스크, 가로수 보호덮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공원·녹지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벤치, 파고라, 화분대, 자전거보관대, 보행등, 수목보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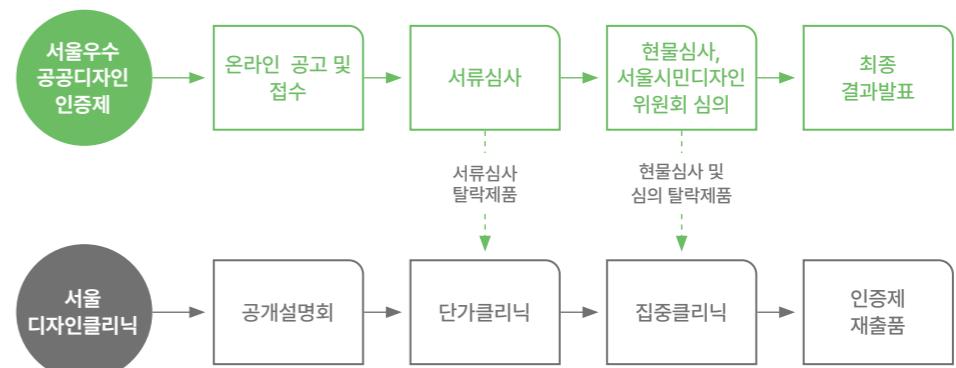
구분	분류	인증대상	
경기도	공공시설물	교통시설물	펜스(교량, 보행자, 저전거), 볼라드, 버스승강장, 자전거보관대, 방음벽(4m 이하) 등
		위생·휴게시설물	휴지통, 음수대, 벤치, 의자, 파고라 등
		광고시설물	게시(공고)판, 현수막 걸이대 등
		보행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도 사인물 등
		판매관리시설물	가판대, 맨홀, CCTV 등
		기타 공공시설물	기타 도지사가 공공시설물로 인정하는 시설물
충청남도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가로등, 펜스,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대, 정류소 시설물 및 표지판, 자전거 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등 기타 유사시설
		편의시설	벤치, 의자, 쉘터,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파라솔 등 기타 유사시설
		공급시설	분·배전반, 우체통,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등 기타 유사시설
		기타시설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가로나지대, 분수대, 맨홀뚜껑 등 기타 유사시설
	공공매체	이정표, 안내표지판, 방향유도표지판, 버스노선도, 현수막게시대,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기타 유사시설	

● **신청자격** 해당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국내 업체 (법인, 개인)로서 생산과 유통, A/S 등의 능력을 갖춘 업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표준디자인이 적용되어 현장 설치된 시설물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시·군도 포함될 수 있음

● **선정방법**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인증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1차 온라인 서류심사 및 2차 현물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인증기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최초 2~3년간 인증하고, 인증이 만료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최초 인증기간 단위로 재인증 심사를 통해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추진절차



[그림 51]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절차(예시)

- **인증심사 기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심사기준과 배점표를 두고 평가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적합성에 가장 큰 배점을 두고 있음
 - 예시 :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25), 사용성 (15), 심미성·창의성 (15), 경제성 (15), 환경친화성 (15), 업체의 생산능력 (15)

TIP

- 서울시에서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실제 생산에 적용될 기준 등을 제시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

[표 57]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가이드라인 적합성	40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기능성	30	내구성, 사용편의성, 유니버설, 무장애 등 종합평가
	경제성, 시공용이성	10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친환경성, 조화성	10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주변과 조화로울 것
	창의성, 심미성	10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및 색채 등이 아름답고 독창적일 것
인천광역시	가이드라인 적합성	40	인천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종합적 측면에서 적합할 것
	사용성/ 기능성	15	사용목적과 맞는 기능을 갖추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
	경제성	15	상업적 생산에 용이하고 제작, 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환경친화성	10	친환경에 적합한 재료사용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창의성/ 심미성	10	디자인의 독창적이고 미적 우수성이 뛰어날 것
	업체 생산능력	10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능력 보유, 계약 납품이 원활할 것
세종특별자치시	가이드라인 적합성	50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준수
	심미성	15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아름답게 구성될 것
	사용성	15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경제성	10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환경친화성	10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경기도	가이드라인 적합성	25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종합평가
	사용성	15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경제성	15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심미성/ 창의성	15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및 색채 등의 요소가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경기도	환경친화성	15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업체의 생산능력	15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 A/S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계약 집행이 용이할 것
충청남도	가이드라인 적합성	3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적합성 종합 평가
	사용성	20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창의성/ 심미성	20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경제성	15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환경친화성	15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 **디자인클리닉** 인증제에 탈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인 디자인닥터의 지도를 통해 디자인을 개선하여 차기 인증제에 출품하도록 유도함
 - 서울특별시 : 단기클리닉(탈락원인 분석 등), 집중클리닉(6주간 집중지도)으로 구분하여 디자인닥터가 디자인 개선 지원
 - 경기도 : 디자인닥터를 매칭하여 10주간 디자인 컨설팅

[표 58] 디자인클리닉 전후 비교

**인증심사 의견**

- 디자인과 색상이 과하고, 조명기구 형태와 등주가 이질적이며 보안카메라가 어울리지 않음
- 기능에 비해 과도한 형태 및 색채를 적용하여 연속적으로 설치 시 가로경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 형태적 완결도가 없고 도시 환경과의 색상이 부조화되며, 심미성 부족
- 공원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에는 한계

3.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3.1. 종합정보시스템 개요

- 2019년 5월 공공디자인 관련 아카이빙과 전문인력 증명서 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개설된 후 고도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https://publicdesign.kr/main>)을 통해 접근 가능함



[그림 52]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3.2. 종합정보시스템 구조

- 사업소개, 사업안내, 공공디자인 인증발급, 지식정보, 알림소식의 5가지 최상위 카테고리로 구성됨
- 사업소개 페이지는 공공디자인 관련 연혁,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다룸
- 사업안내 페이지는 공공디자인 문화 확산과 기반 조성으로 구분하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개요 및 목적, 내용 등을 다룸
- 공공디자인 인증발급 페이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과 전문회사의 발급 안내, 대상, 신청 방법, 현황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
- 지식정보 페이지는 공공디자인 전문 자료(사진, 보고서, 논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실과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제공함
- 알림소식 페이지는 모집, 교육, 언론홍보 등의 정보를 제공함

부록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4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9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2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144
5.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154
6.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156
7.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158
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권장형) 160
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일반형) 167
10.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현황 176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디자인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 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서의 보상)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 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삭제>

*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공급 실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현황
 5.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 현황
 6.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여성가족부
6. 해양수산부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의 발주금액(이하 "발주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근(常勤) 전문인력 1명
2. 발주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2명
3. 발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3명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

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 표와 같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 기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2.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에의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삭제>

*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수기준	가. 월 보수액: (월 기준인건비 × 2) × 참여율 나. 일 보수액: 월 보수액 ÷ 22

비고

1. "월 기준인건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월 임금을 하한으로 한다.

2. "참여율"이란 월 총근무시간(1일 8시간 × 월 22일 근무)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삭제>

*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 별지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 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로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p> <p>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p> <p>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공급 실태</p> <p>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p> <p>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현황</p> <p>5.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 현황</p> <p>6.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p> <p>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p> <p>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p> <p>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p> <p>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p> <p>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p> <p>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p> <p>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p> <p>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p> <p>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여성가족부 6. 해양수산부</p> <p>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p>	<p>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들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의 발주금액(이하 "발주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근(常勤) 전문인력 1명 2. 발주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2명 3. 발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3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안서의 보상) ① 국가기관들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들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들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국가기관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들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들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들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기관들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들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조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5. 공공디자인의 용역 대가 산정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 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인력의 일당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인건비기준단가(직접인건비 산출연도에 적용되는 월인건비기준단가로서 1개월 22일 근무와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말한다)의 등급별 기준금액에 1.8~2.2배(경력에 따라 조정)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책임디자이너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2. 디자이너급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제1호의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보조디자이너급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3D 그래픽비, 영상·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위탁비·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체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삭제>

*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6.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예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 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 한다.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삭제>

*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7.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종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① 대학원·대학·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1. 대학원 : 24학점 이상

2. 대학·전문대학 : 60학점 이상

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

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삭제>

*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별표]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관련분야	학과
도시계획·건축설계	건설디자인과, 건설환경디자인과, 건축도시학부, 건축학과, 건축학부(공간디자인전공), 건축공간환경디자인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그래피과, 건축도시공학부, 건축디자인과, 건축리모델링과, 건축설계과, 건축설내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토목과(건축전공), 건축토목디자인과, 건축토목조경학부, 공공디자인행정학과, 국토도시계획학과, 도시건축학부,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공학과, 도시공간개발과, 도시행정학과, 도시환경공학과, 도시환경과, 디자인건축과, 디자인용융건축과, 목조건축과,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건축전공),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주거·실내계획전공),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해양건설공학전공),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디자인건축과, IT건축디자인과, 인테리어학과, 인테리어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산건축설계과, 조경도시개발학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주거환경디자인과, 친환경건축학과, 컴퓨터건축디자인과
디자인·미술	건설공간디자인과, 건축그래픽디자인과, 건축도시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 건축미디어디자인과, 건축설내디자인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공간디자인학과, 공간환경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전공, 공공미술 전공, 공공용융디자인과, 공공디자인정책학과, 공업디자인학과, 공예과, 관광문화환경디자인학과, 그래픽디자인과, 그래픽산업디자인과, 도시공간디자인학과, 도시그래픽아트과, 도시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공학과, 디자인예술학부, 디자인학부(생활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실내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제품환경디자인학), 디자인학부(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부),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미술디자인학부, 비주얼디자인과,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미술학과, 산업환경디자인과, 색채디자인과, 색채산업디자인과, 생활디자인학과, 생활예술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생활환경디자인학과, 스페이스디자인학과, 시각공간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예술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시각조형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실내공간디자인전공, 실내장식디자인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IT산업디자인과, 에코시스템디자인과, 예술디자인학과, 유니버설디자인학과, 의료간호디자인학과, 의료디자인과, 의료환경디자인과, 입체미술전공, 제품공간디자인과, 제품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공학과, 제품설계디자인학과, 제품 및 환경디자인전공, 제품환경디자인전공, 조소과, 조형디자인학과, 조형예술전공, 지형디자인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환경디자인전공,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회화과
조경설계	건설조경학부, 녹지조경학과, 도시조경학과, 도시조경인테리어과, 도시환경조경과, 원예조경아트과, 레저원예조경과, 생태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원예조경과, 자영조경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과, 조경산업과, 조경설계전공, 조경인테리어과, 조경토목과, 조경·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비고

1. 과, 학과, 학부, 전공, 계열, 과정은 같은 의미로 본다.

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권장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시·도 / 시·군·구(이하 "시·도 / 시·군·구"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도 / 시·군·구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도 / 시·군·구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도 / 시·군·구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 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
 -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책무)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시·도 / 시·군·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 / 시·군·구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도 / 시·군·구보(이하 "관보"라 한다) 및 시·도 / 시·군·구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도 / 시·군·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

내에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도민 / 시민·군민·구민은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을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도 / 시·군·구 경관조례」 제OO조제O항제O호에 따른 심의사항(단, 야간경관시설은 제외)

6.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 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 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 제4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또는 부시장·부지사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 등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규정)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 또는 담당 과장 등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규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OO시·도 /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O명

나.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종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해촉)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과장(또는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0명 이상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

제19조(심의신청 시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절차)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제2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도 / 시·군·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민단체·전문가·구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 시·도 /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

제28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관보 및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30조(표창)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도 / 시·군·구 도시디자인 조례」, 「시·도 / 시·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도 / 시·군·구 도시디자인 조례」, 「시·도 / 시·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디자인위원회로 본다.

제5조(디자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6조(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도 / 시·군·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시·도 / 시·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에 따라 수립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제12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제12조제1항제4호 관련)

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일반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시·도 / 시·군·구(이하 "시·도 / 시·군·구"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도 / 시·군·구가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도 / 시·군·구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도 / 시·군·구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책무)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시·도 / 시·군·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 / 시·군·구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제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도 / 시·군·구보(이하 "관보"라 한다) 및 시·도 / 시·군·구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도 / 시·군·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도민 / 시민·군민·구민은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⑥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범용디자인

제12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3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든 시·도 / 시·군·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도 / 시·군·구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용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시·도 / 시·군·구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3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5조(범용디자인 사업)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도 / 시·군·구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도 / 시·군·구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4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1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도 / 시·군·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6. 그 밖에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도 / 시·군·구 경관조례」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심의사항(단, 야간경관시설은 제외)
6.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조제○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2. 「시·도 / 시·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조제○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④ 제1항 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 제4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또는 부시장·부지사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 등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규정)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 또는 담당 과장 등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규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시·도 /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0명

 나.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과장(또는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0명 이상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5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

제27조(심의신청 시기)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절차)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제3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도 / 시·군·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민단체·전문가·구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 /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

제35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관보 및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7조(표창)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도 / 시·군·구 도시디자인 조례」, 「시·도 / 시·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도 / 시·군·구 도시디자인 조례」, 「시·도 / 시·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디자인위원회로 본다.

제5조(디자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6조(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도 / 시·군·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시·도 / 시·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에 따라 수립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제20조제1항제3호 관련)은 p.00 [참고 5] 참조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제20조제1항제4호 관련)은 p.00 [참고 6] 참조

10.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현황



광역	기초	전담부서	조례	주소
서울특별시(26)	본청	디자인정책담당관	<input type="radio"/>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강남구	디지털도시과 공공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동구	도시경관과 도시경관사업팀	<input type="radio"/>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북구	건축과 도시경관팀	<input type="radio"/>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강서구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관악구	도시계획과 도심개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광진구	도시계획과 도시전략개발팀	<input type="radio"/>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구로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828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만산로 245(구로동)
	금천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노원구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도봉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25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작구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마포구	건축지원과 건축운영팀	<input type="radio"/>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초구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성동구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	<input type="radio"/>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북구	건축과 공공건축1팀	<input type="radio"/>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 5가)
	송파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양천구	건축과 건축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80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전략정비팀	<input type="radio"/>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용산구	건축과 건축기획팀	<input type="radio"/>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광역	기초	전담부서	조례	주소
온평구	도시계획과 경관정비팀	<input type="radio"/>	(03384) 서울특별시 온평구 온평로 195(녹번동)	
	미래도시추진과 도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45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도시경관과 디자인팀	<input type="radio"/>	(02043)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부산광역시(17)	본청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input type="radio"/>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강서구	-	-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77(대저1동)
	금정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input type="radio"/>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기장군	건축과 도시재생팀	-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기장대로 560
	남구	문화예술과 도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동구	미래사업단 도시공간시설계	<input type="radio"/>	(48781)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1(수정동)
	동래구	-	-	(478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낙민동)
	부산진구	창조도시과 도시재생정책계	<input type="radio"/>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북구	도시창조과 도시공간사업팀	<input type="radio"/>	(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사상구	도시재생과 디자인광고팀	-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하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계	<input type="radio"/>	(493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서구	-	-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수영구	건축과 재개발계	<input type="radio"/>	(48305)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연제구	창조도시과 광고물관리계	<input type="radio"/>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영도구	건축과 건축팀	<input type="radio"/>	(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중구	-	-	(4892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해운대구	창조도시과 도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480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종동2로 11(종동)
대구광역시(10)	본청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input type="radio"/>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	(43113)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남구	정책추진단 공공시설1팀	<input type="radio"/>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달서구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	-	(42731)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달성군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팀	<input type="radio"/>	(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광역	기초	전담부서	조례	주소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동구	정책추진단 정책디자인팀	○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북구	도시행정과 도시디자인팀	○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서구	도시재생과 도시경관팀	○	(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중구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팀	-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동인동2가)
인천광역시(11)	본청	건축과 공공디자인담당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강화군	도시개발과 경관기획팀	○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계양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남동구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담당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동구	도시경관과 경관기획팀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도시경관팀	○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부평구	도시경관과 도시경관팀	○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서구	도시재생경관과 도시경관팀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연수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옹진군	도서개발과 경관개선팀	○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중구	건축과 도시경관팀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관동1가)
광주광역시(6)	본청	건축경관과 공공디자인팀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산구	-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송정동)
	남구	-	-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동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북구	-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서구	-	-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대전광역시(6)	본청	명품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혁신팀	○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덕구	건축과 도시경관팀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동구	건축과 광고물팀	○	(34691)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서구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	(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유성구	건축과 도시경관팀	○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중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	(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광역	기초	전담부서	조례	주소	
울산광역시(6)	본청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팀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남구	도시창조과 도시경관팀	○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둑질로 233(달동)	
	동구	도시과 디자인팀	○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북구	도시과 전략사업팀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울주군	신성장개발과 신성장산업팀	-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중구	건축과 경관관리팀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세종특별자치시(1)	본청	건축과 경관관리팀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경기도(32)	본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가평군	도시과 도시경관팀	○	(1241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고양특례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TF팀	○	(10460)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청로 10
		과천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	(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광명시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	○	(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주시	건축과 유니버설디자인팀	○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리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군포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김포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남양주시	기반조성과 공공디자인팀	○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	○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부천시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	○	(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성남시	건축과 공공건축디자인팀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수원특례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	○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안산시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성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팀	○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양시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양주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양평군	도시과 도시경관팀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여주시	건축과 도시경관팀	○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홍문동)	
	연천군	건축과 건축행정팀	○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광역	기초	전담부서	조례	주소
충청북도(12)	오산시	건축과 경관디자인팀	○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용인특례시	도시기획단 공공디자인팀	○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의왕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팀	○	(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의정부시	도시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	○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이천시	미래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약로 40(중리동)
	파주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평택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포천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하남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팀	○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화성시	도시기획단 도시디자인팀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충청남도(16)	본청	건축문화과 건축디자인팀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괴산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	○	(28026) 충북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단양군	-	-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보은군	지역개발과 주택팀	○	(28943)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영동군	도시건축과 건축팀	○	(2914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	○	(2903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음성군	건축과 건축디자인팀	○	(2769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제천시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팀	○	(27188)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증평군	도시건축과 주택팀	○	(27927)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진천군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	○	(28527) 충청북도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충주시	균형개발과 재생전략팀	○	(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유흠로 21(금릉동)
	본청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계룡시	도시건축과 도시경관팀	○	(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금산군	도시건축과 도시경관팀	○	(32733)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논산시	도시주택과 경관디자인팀	○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당진시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광역	기초	전담부서	조례	주소
전라남도(23)	보령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33483)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부여군	도시건축과	○	(3316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서산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서천군	도시건축과 주택팀	○	(3363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	○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예산군	건축과 주택팀	○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천안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	(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청양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3332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도시재생팀	○	(3214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홍성군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	(3222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라북도(20)	본청	문화산업과 경관디자인팀	○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청사
	강진군	건설과 도시경관팀	○	(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고흥군	건설과 도시재생팀	○	(59542)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충군청로 1
	곡성군	도시경제과 경관디자인팀	○	(5753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광양시	도시과 도시경관팀	○	(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구례군	지역개발과	○	(57656) 전라남도 구례구 구례읍 봉성로 1
	나주시	도시과 경관디자인팀	○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담양군	도시과 도시계획팀	○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추성로 1371
	목포시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	○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무안군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	(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보성군	도시개발과	○	(5945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순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	(57956)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신안군	섬발전진흥과 경관조명팀	○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전라북도(20)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영광군	지역개발과 지역계획팀	○	(5703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	○	(58415)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완도군	지역개발과	○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장성군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흥군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	○	(5932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광역	기초	전담부서	조례	주소
경상북도(23)	진도군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	(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해남군	건설도시과	○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화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	○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현길 23
경상북도(23)	본청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산시	건설과 도시재생디자인팀	○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경주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고령군	도시과 공공디자인팀	○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구미시	미래도시전략과 도시경관팀	-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김천시	원도심재생과	○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문경시	건축과	○	(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봉화군	-	-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상주시	도시과 도시경관팀	○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성주군	도시계획과	○	(400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	○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영덕군	도시디자인과 건축디자인팀	○	(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양군	-	-	(3653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주시	도시과 도시경관팀	○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	○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예천군	건축과	○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울릉군	-	-	(4022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진군	도시새마을과 공공디자인팀	-	(3632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의성군	농촌활력과 경관디자인팀	○	(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을 군청길 31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송군	농촌활력과 공공디자인팀	○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칠곡군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팀	○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포항시	건축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	○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장동)
경상남도(19)	본청	도시정책과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이창구 중앙대로 300
	거제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광역	기초	전담부서	조례	주소
거창군	도시건축과 스마트도시팀	○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고성군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	○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을 성내로 130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남해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	○	(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밀양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사천시	도시과 도시경관팀	○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산청군	지역발전과 주택담당	○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양산시	건축과 공공디자인팀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의령군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진주시	주택경관과 도시경관팀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창녕군	도시건축과	○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 도시경관팀	○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통영시	도시과 도시경관팀	○	(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길33(무전동)	
하동군	도시과 도시건축담당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함안군	도시건축과 공공디자인담당	○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양군	안전도시과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	○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강원특별자치도(19)	본청	건축과 경관디자인팀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릉시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	○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고성군	허가민원과	○	(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동해시	도시과 도시경관팀	○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삼척시	도시과	○	(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속초시	건축과 경관관리팀	○	(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양구군	도시교통과 스마트도시재생팀	○	(245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양군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	(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영월군	지역개발실 도시경관팀	○	(262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시	도시계획과 디자인경관팀	○	(263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인제군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187번길 8

[그림 출처]

광역	기초	전담부서	조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10)	정선군	도시과	○	(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철원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	(240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춘천시	도시계획과 디자인팀	○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태백시	건축과 건축경관팀	○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불로 21(황지동)
	평창군	도시과 경관관리팀	○	(253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홍천군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화천군	지역경제과	○	(2412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횡성군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2522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을 태기로 15
	본청	주택건축과 공공디자인팀	○	(2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15)	고창군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	(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군산시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	○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김제시	도시과 도시경관팀	○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남원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무주군	태권문화과 문화정책팀	○	(555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부안군	민원과 주택관리팀	○	(563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순창군	민원과 건축팀	○	(5603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완주군	건설도시과 도시경관재생팀	○	(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익산시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계	○	(5462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임실군	건설과 도시재생팀	○	(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장수군	민원과 마을경관팀	○	(5563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주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	(5499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정읍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진안군	건설교통과 개발행위팀	○	(5543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제주특별자치도(3)	본청	건축경관과 경관디자인팀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시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팀	-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 [그림 1] 행정업무 안내서의 구성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2] 업무체계 흐름도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3] 관련 누리집 표기(예시)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4]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적용 기준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5] 공공디자인의 개념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6] 법의 위계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7] 공공디자인법의 위계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8] 공공디자인 관련법의 위계(국토부 소관 중심)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9] 중앙행정기관 조직도 출처 : <https://www.gov.kr/portal/orgInfo>
- [그림 10] 무장애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1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필요성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12]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13] 고속도로 공사종 차선표시 차량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14] 을지트윈타워 방재체계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15] 공공디자인 이슈 키워드 분석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16] 양양군 서피비치 출처 : https://tour.yangyang.go.kr/pub/todo_surfing.do
- [그림 17] 보행 안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전용 전.후 비교
출처 : 보행 안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그림 18] 약자를 고려한 금융기관 ATM화면 및 주문 키오스크
출처 : <https://www.consumernews.co.kr> & <https://economychosun.com>
- [그림 19] 2024 서울정원박람회(광진구 뚝섬공원)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20] 편디자인을 적용한 가벼운 이동형 가구디자인으로 사색의 공간 제공(종로구 청계천)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21] 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지하철역(5호선 여의나루역)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22] 웨빙을 위한 공공공간의 활용 출처 : <https://www.nyc.gov>
- [그림 23] 액티브 디자인 출처 : <https://www.nyc.gov>
- [그림 24] 기후 복원력 디자인 가이드라인 출처 : <https://www.nyc.gov>
- [그림 25] 권장형과 일반형 통합조례 개념도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26] 조례·규칙 입법 흐름도 출처 : <https://www.mois.go.kr> 자치입법 절차 참조
- [그림 27] 지역위원회 운영 흐름도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28] 심의·자문 도서 작성 예시 1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29] 심의·자문 도서 작성 예시 2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30] 심의·자문 도서 작성 예시 3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31] 심의·자문 도서 작성 예시 4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32] 심의·자문 도서 작성 예시 5 출처 : 연구자 작성
- [그림 33] 남원시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 출처 : 2023 남원시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활동 결과보고서
- [그림 34] 사업추진 단계별 행정지원 체계 출처 : 2023 남원시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활동 결과보고서
- [그림 35] 남원시 총괄디자이너 제도 도입 성과 출처 : 2023 남원시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활동 결과보고서

[참고문헌]

[그림 36]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연계 개념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37] 지역계획 수립 절차(계약 이전)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38] 사업추진 흐름 개요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39] 계약업무 흐름도 출처 :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2022), <https://www.bai.go.kr>

[그림 4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업무 흐름 개요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41]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출처 : <https://www.law.go.kr>

[그림 42]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절차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43]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및 신고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출처 : <https://www.law.go.kr>

[그림 44] 공청회 주요 절차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45] 공청회 실시 흐름도 출처 : 공청회 운영 매뉴얼(2018), <https://www.maip.kr>

[그림 46] 공청회 진행 절차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47] 주민협의체 구성의 단계별 발전과정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4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출처 : <https://www.kcdf.or.kr>

[그림 4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절차 출처 : <https://www.kcdf.or.kr>

[그림 50]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부문/ 분야별 심사 절차 출처 : <https://www.kcdf.or.kr>

[그림 51]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절차(예시)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52]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출처 : <https://publicdesign.kr>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등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7), 공공디자인 일반 교육과정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7), 공공디자인 직무 교육과정
- 문화체육관광부(2017),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3),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23),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 사례집
- 감사원(2019),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 행정안전부(2022), 자치법규 업무매뉴얼
- 행정안전부(2018), 공청회 운영 매뉴얼

지방자치단체 등

- 서울시(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서울시(2019),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디자인가이드라인
- 세종시(2018), 세종우수공공디자인
- 경기도(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익산시(2018),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국립공원공단(2012), 국립공원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 충남공공디자인센터(201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 조례안 개발

누리집(홈페이지)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ttp://www.kcdf.or.kr/web/main/mainPage.do>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main.jsp>
-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 온-나라 정책연구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개정판

Public Design Administration Work Guide Revised Edition

연 구 자 강성중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연구소장
장영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채완석 (주)투엔티플러스 부대표
최성호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

편집디자인 및 그래픽 기획 플럼디자인

사업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업진행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디자인융합본부 공공디자인기반팀

발 행 인 장동광

발 행 일 2024년 11월

발 행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306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TEL. 02-398-7900 FAX. 02-398-7999
publicdesign.kr | www.kcdf.kr

발간등록번호 결24-05

ISBN 979-11-92787-41-1(93600)

© 202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에 대한 권리는 연구자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